麻藥類 事犯 搜査上 問題点과 그 改善方向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 Problems of Drug-related Investigation and Their Solutions

— 히로뽕 事犯 搜査를 中心으로 —

On Investigating Philopone Cases

指導敎授 劉 成 澤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1992年 6月

漢 城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一 般 行 政 專 攻

全 經 壽

論文認准書

全經壽의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2年　6月　日

審査委員長　李 鍾 受

審 査 委 員　黃 振 洙

審 査 委 員　鄭 成 澤

漢 城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여러 교수님들과 선배동문들이 친절하게 지도해주신 덕분입니다.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이종수, 황진수, 정성택교수님과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 계시는 임경호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검찰청 문효남 부장검사님께서는 이 논문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전문적인 수사경험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던 아내, 그리고 영욱, 치홍이와 함께 나라 안팎이 마약문제로 시끄러운 이때 이 논문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2. 8

全 經 壽

國文抄錄

마약류 사범 수사상 문제점 및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전 경 수
지 도 교 수 정 성 택

한국은 최근 일본의 히로뽕사범의 병폐에 물들어 몇년간 잠복기를 거치다 1988년을 전후하여 사회적으로 표면화 되었고 1992년 현재 까지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처코져 수사기관은 혼신을 다하고 있으나 동종사범에 종사하는 수사관이 히로뽕의 약리적 작용 및 단속 법률인 향정신의약품 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는 물론 적발한 범죄 사실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상 적법하게 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다.

이렇게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사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전개시킬 수 있도록 그 개선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기된 문제점의 내용과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히로뽕 사범의 경시 경향, 수사예산의 확보, 정보원의 활용상 한계점 및 밀수출입에 대한 연안 봉쇄의 곤란에 대한 수사실제상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올바른 방안을 제시했고

둘째, 수사 이론상의 문제점은 약물 임의 입증, 물증 없는 사건의 입증, 뇨검사, 함정수사, 사건의 입건에 대해 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세째, 히로뽕 사범 態樣별 수사 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제조사범 유통사범 소지사범 사용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방법을 개선시켰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의 고찰은 기히 발표된 국내외 주요 문헌을 인용은 물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자료를 활용하였고 수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부산지방에서 발생한 실제상황을 토대로 그동안 수사가 진행된 경과나 추이에 따라 수사 및 공판기록을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했다.

이상과 같이 연구 분석한 내용에 의거 전수사관이 히로뽕 퇴치업무를 수행할 때에 심도있게 활용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또한 수사활동 이전에 충분한 예방과 홍보 활동으로 스스로 마약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끔 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국민정신을 강화시키는데도 앞장서야 됨을 주장했다.

目　　次

第1章 序　論 …… 1

第1節 研究의 目的 …… 1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 2

第2章 理論的 背景 …… 3

第1節 麻藥類의 槪念 및 種類 …… 3

第2節 히로뽕의 藥理的 作用 …… 5

第3節 히로뽕亂用이 個人 및 國家社會에 미치는 影響 …… 7

1. 個人에게 미치는 影響 …… 8

2. 國家社會에 미치는 影響 …… 8

第3章 히로뽕사범搜査上의 實態와 그 問題点 …… 11

第1節 히로뽕 事犯 搜査上의 實態 …… 11

1. 히로뽕事犯의 實態 …… 11

2. 히로뽕事犯의 一般的인 傾向 …… 19

3. 히로뽕 事犯의 搜査行政體制 …… 23

1) 韓　國 …… 23

2) 美　國 …… 26

3) 日　本 …… 28

第2節 히로뽕事犯 搜査上의 問題点 ····· 30
1. 搜査 理論上의 問題点 ····· 30
2. 搜査 實際上의 問題点 ····· 32
3. 搜査 方法上의 問題点 ····· 36
第4章 히로뽕事犯의 搜査上問題点에 대한 改善方向 ····· 37
第1節 搜査 理論上의 改善方向 ····· 37
1. 히로뽕 藥物의 立證 方法 ····· 37
2. 物證없는 事件의 立證方法 ····· 38
3. 否認事件의 立證方法 ····· 41
4. 尿 檢査方法 ····· 43
5. 效果的인 陷穽搜査 ····· 46
第2節 搜査 實際上의 改善方向 ····· 48
1. 히로뽕 事犯退治에 對한 國民精神強化 ····· 48
2. 搜査 豫算의 確保 ····· 49
3. 情報員의 올바른 活用 ····· 50
4. 沿岸封鎖 對策 ····· 51
5. 警察搜査 體制의 現代化 ····· 51

第3節 捜査方法上의 改善方向 ····· 54

1. 製造事犯 捜査 ····· 55

2. 流通事犯 捜査 ····· 58

3. 所持事犯 捜査 ····· 65

4. 使用投薬 事犯 捜査 ····· 71

第4節 히로뽕事犯捜査에 따른 一般的인 捜査行政方向 ····· 73

1. 鎭壓的인 側面 ····· 73

2. 豫防的인 側面 ····· 74

3. 中毒者에 對한 事後對策 ····· 77

第5章 結 論 ····· 83

參考文獻 ····· 86

ABSTRACT ····· 89

表 目 次

1. 〈表 3－1〉 히로뽕事犯의 年度別 圍束實績 …… 12

2. 〈表 3－1〉 類型別 圍束實績 趨勢 …… 13

3. 〈表 3－1〉 히로뽕事犯의 年度別 職業別 現況 …… 14

4. 〈表 3－1〉 히로뽕事犯의 地域別 圍束現況 …… 15

5. 〈表 3－1〉 各國의 히로뽕事犯計數 …… 16

6. 〈表 3－1〉 히로뽕 事犯의 年度別 年齡別 現況 …… 17

7. 〈表 3－1〉 在所者히로뽕事犯의 年度別 再犯現況 …… 18

8. 〈表 3－1〉 警正·警監級 捜査經歷 現況 …… 35

圖 目 次

1. 〈圖 3－1〉 麻藥類 圖解圖 …… 5

2. 〈圖 3－1〉 年度別 事犯別 圍束實績趨勢 …… 12

第 1 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히로뽕 사범은 각성약물을 비의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사용사범,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소지관리사범, 매매양수양도함으로써 성립하는 유통사범, 외국으로 수출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수출입 사범, 제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제조사범을 통틀어 말한다. 행동(behavior), 인식력(perception) 그리고 감정(mood)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自意에 의한 비의학적 사용을 의미하는 약물남용(drug abuse)이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이는 좁은의미의 사범에 불과하다.

원래 히로뽕 사범은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만연하기 시작한 소위 제1차 시기를 거쳐 1960년에 이르러 제2차 시기에 접어 들면서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사회적으로 가장 골치아픈 범죄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970년 초반에 접어들면서 일본에서 히로뽕에 대해 계속적인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그 제조범들이 발붙일곳을 찾지 못하자 일본의 히로뽕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히로뽕에 대한 기술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후반 까지만해도 히로뽕 투약사용 사범은 별로 사회적 이목을 끌지 못하였고 국민들 사이에도 히로뽕의 폐해를 별로 실감하지 못하였던 형편이어서 정부로서도 다른 범죄만큼 행정력을 경주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히로뽕 사범이 8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사회적으로 표면화 됨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척결의지로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정비하여 이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히로뽕사범은 수출입이 많은 부산에서 만연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으나, 당시 부산지검 및 부산시경 등의 수사기관에서 강력하고 집중적인 수사력과 단속으로 제조사범은 거의 검거되었고 히로뽕사범은 줄어들어서 1990년을 전후하여 뚜렷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동 사범을 검거하여 엄벌에 처하고 말단의 뿌리까지 근절해야 하므

로 가장 방대한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경찰은 근원적인 봉쇄책을 강구하여야 할 지상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범에 대한 수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히로뽕의 약리적작용을 이해하여야 하고, 일반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모든 수사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방법으로 대처함이 긴요하며, 히로뽕 사범수사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의 단속법률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 히로뽕사범에 대한 형사소송법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히로뽕 사범수사에 다년간 종사해본 본 연구자는 상술한바와 같은 히로뽕의 폐해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자하는 필요성을 감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의 히로뽕수사상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려는데에 촛점을 맞추려 한다.

第 2 節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마약류 라 함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장기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의존성이나 금단증상을 체험하게 되는 약물 또는 물질로서 마약법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관리법상 대마, 또한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접착제(본드)와 부탄가스등을 총칭하는 말이다[1] 이러한 마약들은 인체에 유해 를 주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런것들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수사이론상 마약류 또는 마약류사범이라 한다[2]

마약류사범은 마약사범, 대마사범, 향정신성사범이 있는데 주로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사범, 제조사범, 소지·재배사범, 사용(투약) 사범이 있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거 의료 행위문란 및 약사들의 유통질서 문란행위등이 있으나 사범별 실태와 여러 문제는 마약류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마약법상 마약사범과 향정신의약품 관리법상 향정신성

---

1)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임.

2) 1991년 2월 1일에 개정 발효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마약류 유사대체품인 접착제는 처벌가능하나, 부탄가스는 처벌이 불가능함.

사범, 대마관리법상 대마사범, 기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에 해당되는 메스암페타민인 일명 히로뽕에 대해 수사상 문제점과 그 대책방향에 대한 범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히로뽕사범의 수사상 개념의 종류, 히로뽕사범의 약리적작용 및 개인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히로뽕사범에 대처하고 있는 외국의 수사행정체제와 우리나라의 수사행정체제도 비교하여 알아 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히로뽕사범의 수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인 수사이론상의 문제점과 수사 실제상 및 수사방법의 문제점을 깊이있게 연구, 그 개선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범위에 걸쳐 연구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 이론적배경에 따른 자료는 각종 문헌을 토대로 하였고 수사상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사례에 의한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분석하여 이용했다.

둘째 : 수사전문가가 실제로 범죄현장에서 체험하고 수집한 자료에 의한 경험적 접근법을 원용 하였다.

세째 : 전체적 논리의 전개는 영향변수에 촛점을 맞추어 귀납적으로 전개하였다.

第 2 章 理論的 背景

第 1 節 마약류의 개념 및 종류

약리학적인 마약류의 정의상의 종류는 인간에게 의존성이 있으면서 오남용되는 물질로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를 마약류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약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마약의 투입시에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3]이 있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

---

3) 의존성이란 약물의 효과를 얻기위해 용량이 증가하는 내성이 형성되었거나 약물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였을때 금단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함.

는 현상인 내성(耐性)[4]이 있으며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는 금단현상(禁斷現狀)[5]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害)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고 있다.

약리적인 마약류의 정의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약류에 대한 정의에 의거 현행 우리나라 실정법상 마약의 종류는 마약법상 마약에 있어 천연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 한외마약이 있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상 규제받는 환각제 각성제,억제제와 대마관리법상 대마초등이 있고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과 유사하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본드 및 부탄가스등이 있다.

마약류중 각성제의 종류는

1) 텐암페타민(Ten amphetamine)

2) 덱스 암페타민(Dex amphetamine)

3) 레브 암페타민(Lev amphetamine)

4) 메스 암페타민(Meth amphetamine)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메스암페타민이 본논문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으며,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히로뽕은 메스암페타민이다. 메스암페타민 및 여타 종류의 암페타민류는 질적 성분상의 큰 차이는 없으나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이 가장 효과가 강하고 코카인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나 마약인 헤로인 보다 더욱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약류중에 메스암페타민인 히로뽕은 향정신성약품에 나열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른 내용을 알기쉽게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6].

---

4) 내성이란 원하는 약물의 효과를 얻기위해 용량을 증가시켜야 되는단계를 말함.

5) 금단현상이란 신체적 정신적고통 즉 불안초조와 안절부절과 같은 합병증세로서 정신적고통을 말한다.

6)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리학적인 정의에 의한 근거로 도해화했다.

〈圖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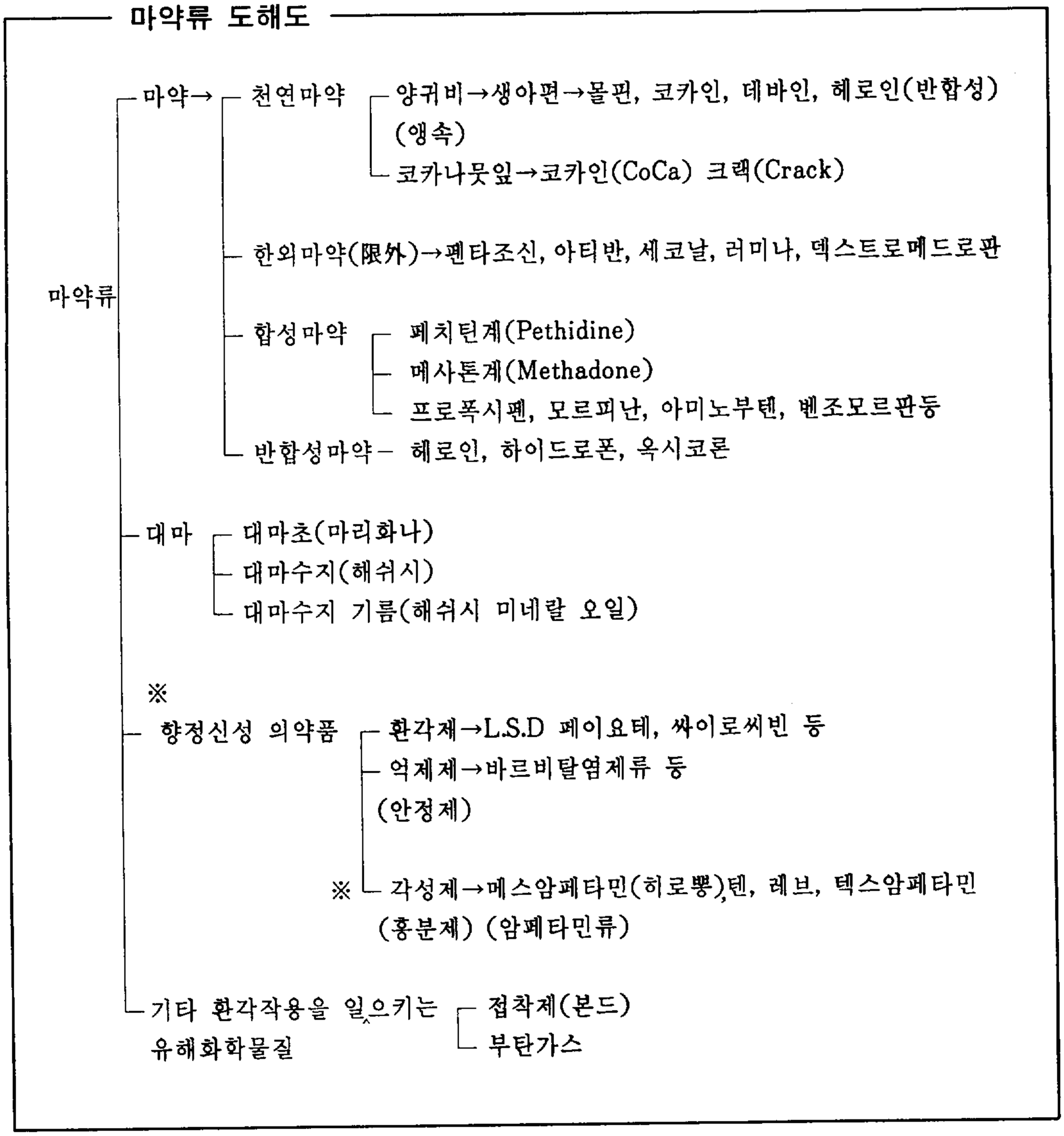

第 2 節 히로뽕의 약리적 작용

히로뽕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장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각성물질로서 이를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리적작용을 수반하며,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각성작용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히로뽕투여의 정신적 효과로는 중추신경계를 작용시켜 피로감을 감소, 또는 지연 시켜줌과 동시에 정신을 맑게 해주고, 또한 모든 종류의 운동성 및 정신활동이 증가하여 다행감과 함께 기분이 증진되며 사용자들은 확신감 및 힘이 증진되는 효과를 들 수 있다.

빈번한 히로뽕남용자인 경우에는 반복적 행위가 증가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쏟게 되며, 특별한 행위를 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모두 무시한채 지속적으로 몰두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화투를 친다던가, 라디오 부속만 만진다던가, 마루 카펫트 먼지만 턴다든가 하는 행위 등이다.

히로뽕을 투약하게 되면 졸음내지 피로의 느낌이 없어져 기분을 고양시키며 자신감을 확대시키며 다행감을 가져오는 작용이 있어 객관적으로 보면 多辯多動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간섭하며 때로는 초조감을 나타내고 자극적(刺戟的)으로 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택시운전사가 야간 운전을 할때 졸음을 피하기 위하여, 노름꾼이 도박장에서 즉흥적인 결단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때가 많고 또한 성적쾌감을 높히거나 強精效果를 노리는 등 SEX의 목적으로 사용한 실례가 있다.

히로뽕과 코카인이 성적 민감성을 극대화 시킨다고 하는 속성이 있는 바, 이는 억제의 작용에 의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계속 사용하면 성불구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히로뽕은 입이나 코 또는 혈관으로 투여되며, 경구투여시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되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초기에 입으로 사용한다. 최근에 와서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혈관을 통한 주사기 사용방법은 주사혼에 의거 단속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부에 상처를 내어 바르는 방법과 여자들의 음부의 질내에 넣어 바르는 방법도 택하고 있다. 과거에 보면 가끔씩 히로뽕이나 이와 유사한 각성제를 사용했던 사람으로는 트럭운전사, 공부목적의 학생, 인내력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선수 및 연예인 등의 불법사용 양상도 띠고 있었으나 오늘날은 특정인의 관계없이 남용되고 있다.

일례로, 전쟁당시 일본군에서는 특공대원들에게 히로뽕을 투약시켜 각성상태에서 자폭공격을 감행하도록 하고 명정감에서 정확한 조준점으로 적기를 명중추락시키는가하면 정확한 목표물에 폭탄을 투하하는데도 쓰여졌다.[7]

第 3 節 히로뽕 亂用이 個人 및 國家社會에 미치는 影響

1.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1) 투약(사용)후 인체에 미치는 증세

히로뽕의 투여는 약기운에 의거 생활의 의욕을 되찾고 무엇이든 하는일이 침착, 정밀, 고도의 정신집중 상태가 계속되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허탈감에 빠져 지옥 또는 현실이 비참해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의 금단증상이 되풀이 된다[8]. 이를 사용함으로써 쾌감을 느낀자는 재차 이를 사용하고싶은 욕구에 놓이게 되고 약효과가 없어진뒤의 불쾌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증세가 계속되다가 이런 증세가 3개월정도 지나면 만성중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2) 인체에 미치는 해독

히로뽕을 사용하는데는 사용시 유해성에 대해 일시에 대량 사용여부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1회 10~20미리그램정도를 사용하면 급성중독에 빠져 불안에 빠지고 환상 망각과 같은 정신착란에 젖게된다. 과도의 수면부족과 식욕감퇴로 영양상태는 극악에 치닫고 중추신경인 뇌에 작용되어 머리속이 텅빈느낌으로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미쳐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극도로 중독되었을 때는 탈진상태와 이로인한 면역결핍증으로 합병증이 찾아와 결국 사망하게 되나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고혈압, 심장병, 뇌손상, 영양장애, 폐렴, 강한 정신적 의존 및 신체적인 의존 내성 등의 고통을 겪고 의처증 및 피해 망상이 되면 누구든지 아주 잔인하게 구타하게 되며 정신분열증에 준하는 회복불능의 병이 계속된다.

메스암페타민인 히로뽕의 보조원료인 화공약품이 차츰 체내에서 단백질을 파

---

7) 村上尙文,「麻藥, 覺醒劑犯罪」, 日世社, 1984. p.19

8) 이정균, "습관성 약물중독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약, vol. 9, no.2, 1970. p. 16

괴하여 영양상실을 가져오며 신체의 균형을 깨뜨리고 간기능을 저해한다. 또한 대부분 신체의 뼈마디 또는 석골에 칼슘이 파괴되어 팔다리가 잘 부러진다.

감정이 격해져서 폭력적이며 사소한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며 인질난동 등 환각성 강력사건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히로뽕을 투약할때 주사자국이 잘 없어지지 않으며 또한 두드러기가 곪기 시작하여 심한 가려움증으로 온 몸이 상처 투성이가되는데 때로는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온 몸을 쥐어 뜯게 된다.

면역기능의 저하로 사소한 염증이 온 몸의 염증으로 바뀔 수 있으며 면역기능 장애로 인한 신부전증과 주사기 하나로 여러사람이 공동사용하기 때문에 간염 및 AIDS에 잘 걸리며 또한 더러운 주사기를 쓰기 때문에 혈관에 찌꺼기가 끼어들고 약물자체의 작용으로 뇌출혈이 심하게 수축하게 돼 젊은 나이에 뇌 중풍 증세로 급사하는 경우[9]와 똑같은 이유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경우도 많으며 폐농양 간농양 심내막염등의 병이 생기게 된다. 정신과적인 합병증으로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약리작용등이 겹쳐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사용시 또는 과잉 투여시 급성 중독 증상으로 급성 공항 발작이나 불안발작이 일어나고 만성적인 정신병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2.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치안문제에 미치는 영향

(1) 환각증세에 의한 강력범죄 다발

히로뽕의 계속적인 투여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폭력을 쓰고 때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도 서슴없이 해치우는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각증세에 의해 폭력[10], 절도[11], 강간[12], 살인[13], 인질난동[14]등의 강력범죄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9) 보건사회부 홍보용지,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의 유해" 1986.
10) 부산지방검찰청, 88검, 사건 제1281호
11) 부산지방검찰청, 88검, 사건 제169호
12) 부산일보 88. 4. 19. 23면
13) 부산지방 검찰청 90검, 사건 제87-169호.
14) 부산지검, 89형, 사건 제919호.

(2) 禁斷症狀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격증

히로뽕 중독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런 상태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에서 이를 탈피하고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바, 피해자와 아무른 동기와 이유없이 자신의 짜증스럽고 불안 초조감의 금단증상에 의한 기분으로 지나가는 남녀가 서로 정담을 나누는 것을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오인하여 식칼로 무차별 난자살해 하는 등의 잔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실례도 있다. 이러한 금단증상은 환시, 환청, 환촉 현상도 동반하는데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

첫째 환시현상으로는 1989년 9월 부산에서 일어난 일로서 히로뽕을 주입한 어떤사람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무실 천장에서 계란이 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혀 깨어진다고 하며 이를 줏어야 한다고 횡설수설하는 현상을 들 수 있고 둘째, 환촉현상으로는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 하여 오던 어떤 여인이 택시를 타고가다 히로뽕 기운이 온몸에 퍼지면서 갑자기 옷에서 강한 전류가 흐르는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하차하여 도로가운데를 뛰어다니는 소동을 벌이는 현상이 있었으며, 셋째, 벌레가 자신의 피부를 살각살각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환청현상을 체험하는 일명 헛보임, 헛소리, 헛감각에 의거 자기자식을 귀신 또는 마귀로 착각 살해하는 끔찍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히로뽕의 계속적인 투여나 중독에 의한 범죄는 치안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히로뽕구입을 위한 강·절도행위 빈발

강·절도 범죄행위를 할때 대담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사전에 약물을 투약하는 사례도 있고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소년들은 히로뽕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강절도 등의 범죄행위도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2) 國家經濟에 미치는 影響

(1) 근로정신 상실에 따른 생산성 감소

약물남용에 빠질 때 파생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활태도의 변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이 약물의 구입과 사용을 중심으로 짜여지게 된다는 점이다. 히로뽕을 일단 사용하게 되면 며칠이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1주일 정도

는 정상생활을 해낼 수가 없으며, 어떤 사용자들은 약기운이 떨어지면서 몹시 피곤해져 정신적, 육체적, 불쾌감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때 다시 약물을 사용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 한달 내내 정상적 생활을 할 수 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약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식욕이 감퇴되기 때문에 영양 결핍문제가 뒤따르는 등 현실자체가 더욱 지겨워지고 비참하게 되어 될대로 되라는식으로 자포자기에 빠지는 경우가 대분이어서 결국 한참 일할 나이에 인생은 끝나게 되고 근로정신이 상실되어 일하지 않는 사회풍조가 만연하게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히로뽕의 남용에 의한 범죄예방과 히로뽕중독의 치료에 의한 국고손실과 마약의 상습적인 투여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은 막대한 국가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2) 치료 및 사후관리에 따른 국고낭비

1992년 현재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기관으로 국고에서 부담 무료로 치료해 주는 충남 공주치료 감호소와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전문치료병원을 개원 운영중이나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확보 입원치료를 통한 운영비 지급으로 많은 국고를 투자하고 있다.[15]

이후 계속 중독자가 증가된다면 더욱 국고지출은 증폭될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우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병원은 환자에 의거 초만원상태이고 이들 치료를 위한 미국 전체예산 20%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기형아 등을 사회구호 기관에서 맡아 구호사업을 벌이는데만도 국고낭비가 별도로 수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3) 安保와 관련한 國力에 미치는 影響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대치된 상황에 있다. 이럴때일수록 건전한 사고 방식과 결집으로 국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각자 맡은바 직분에 전념하지 않고 환락과 약물에 중독되어 국민정신이 나약해 진다면 결국 무력에 의한 침공을 받아 히로뽕중독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히로뽕 투여로 인한 국력의 손실은 결국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본다[16].

---

15) 1992년도 한국정부예산편성 국회자료, 1991. 9

16) 마약류 난용 상습자 입영 및 군생활중 약물중독에 의거 불명예 강제퇴역제대자수는 군사비밀상 정확한 통계를 밝힐 수 없다는 국방부관계자의 구두통보 내용임.

第 3 章 히로뽕事犯 搜査上의 實態와 그 問題点

第 1 節 히로뽕사범의 수사상의 실태

1. 히로뽕 사범의 실태

우리나라의 히로뽕 사범은 1960년대 중반에 일본의 히로뽕관계 폭력단원들이 자국의 강력한 단속을 피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부제조기술 경험자들에게 원료 및 자금 제공을 함과 동시에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히로뽕을 제조하여 주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기 때문에 그리 큰문제는 아니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강력한 단속과 해상봉쇄루트를 차단하자 제조된 히로뽕이 역으로 국내에 파급되었다.[17)]

밀매행위에 의한 사용자 역시 폭력배 및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국한되었으나 1990년을 전후하여 히로뽕사범은 수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용계층의 대중화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 수사당국에서의 강력한 초기진압 단속으로,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전국적이거나 대규모의 폭력조직이 밀조와 밀매를 본업으로 삼는 단계는 아니다 1992년 현재추정 상상용자는 13만명정도로서 총 인구의 300~400분지 1정도이므로 수사력과 계몽을 통하여 계속적인 단속만 한다면 진압가능한 정도이다.

다만 히로뽕사범의 확산현상을 그냥 방치한다면 2~3년안에 미국등과 같이 일반국민의 히로뽕의 오염과 전국적 확산 추정상용자 100만명 돌파가 예상되어 수사력에 의한 억제는 불가능한 상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라면 전문적인 수사체제만 확립되면 진압가능한 실정이라고 보여진다.

1) 히로뽕사범의 검거실적 및 추이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등 남미지역은 코카인과 코카인을 약간 변조한 크랙에

---

17) 유창종,「마약류사범의 실태와 대책」법무연수원, 1989. p. 19

의한 마약사범이 대부분이고, 동양권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히로뽕사범이 가장큰 사회적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바, 세계적 마약류사범의 양대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히로뽕 검거인원의 실적 및 추이는 〈表 3-1〉에 나타난바와 같이 1985년에는 501명이 1986년에는 862명, 1987년에는 1,459, 1988년에는 3,320명, 1989년에는 1,994명, 1990년에는 1,557명, 1991년에는 1,157명으로 검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최고기록을 나타낸 1988년을 넘기면서 검거되는 숫자가 감소되고 있다. 이를 〈圖 3-1〉에 나타내어 년도별 변화상태를 점검해 보았다.

〈表 3-1〉 히로뽕사범 年度別團束實績比較

(단위 : 인원)

年度 / 罪名	'85	'86	'87	'88	'89	'90	'91
計	501 (100%)	862 (172%)	1,459 (291%)	3,320 (663%)	1,994 (398%)	1,557 (311%)	1,157 (231%)
向精	501 (100%)	862 (172%)	1,459 (291%)	3,320 (663%)	1,994 (398%)	1,557 (311%)	1,157 (231%)

통계자료, 대검찰청, 마약범죄백서, 1991. p.23

〈圖 3-1〉 年度別 事犯別 團束實績趨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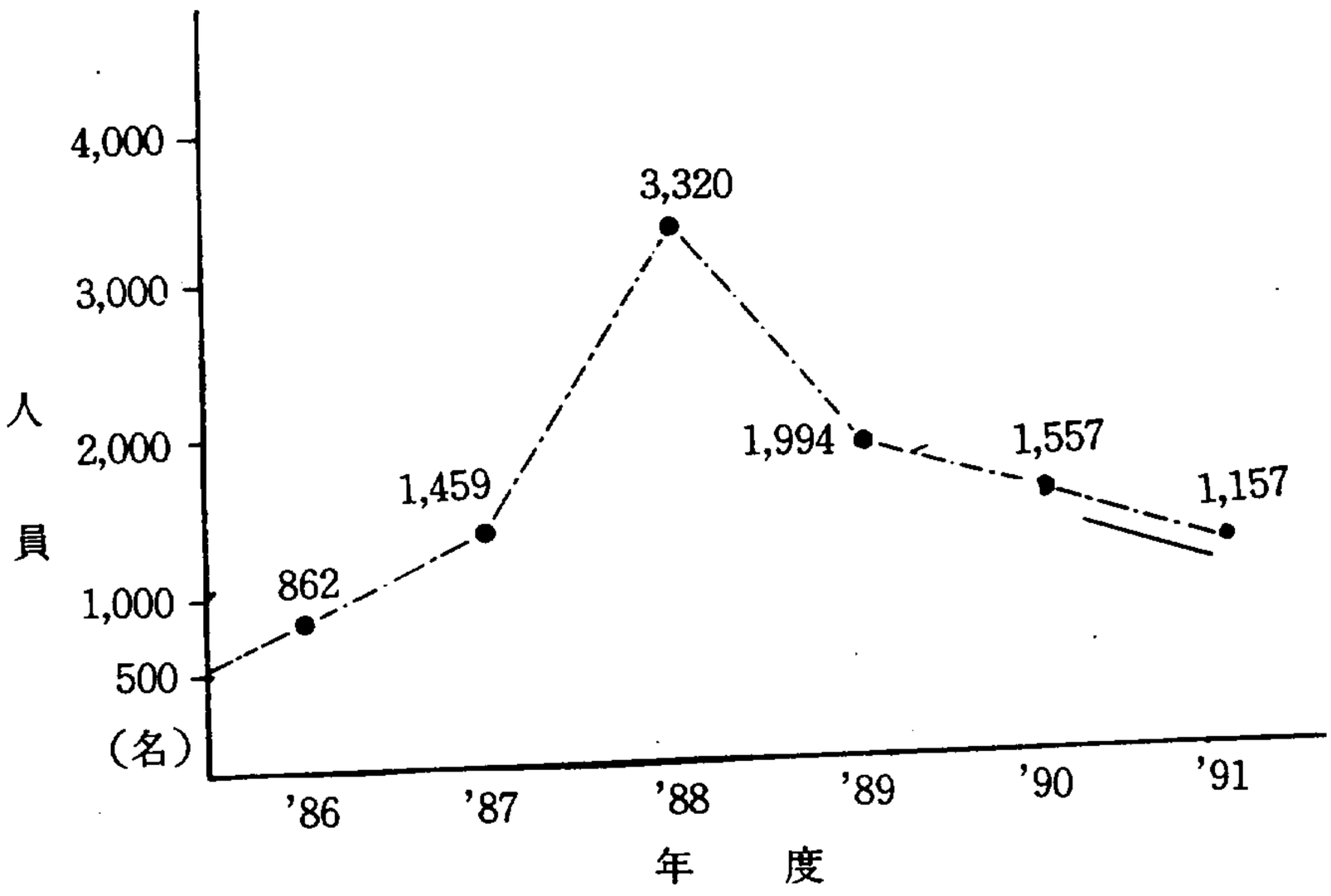

통계자료 대검찰청, 마약범죄백서, 1991. p. 23

위 〈表 3－1〉 〈圖 3－1〉에서 보는것과 같이 히로뽕사범은 1988년에 3,320명에 까지 도달한 최고의 기록을 나타내었고 지난 3년간의 감소추세는 1991년에는 1,157명에 불과하여 1988년 인원의 1/3수준(35%)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관계수사기관에서 강력한 단속은 물론 특히 검찰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대대적인 마약대책에 의한 결과라고 본다.

히로뽕 사범 행위에 따른 유형별 검거추세에 있어서도 1991년 전체 히로뽕사범 1,157명중 사용투약사범이 602명으로 사용투약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밀매가 297명이나 된다. 그러나 1990년 전체사범 1,557명중 사용자및 투약자가 1,158명 밀매자가 234명인데 사용자는 줄어든 반면 밀매행위는 늘어났다. 이점은 밀조밀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수사하여 검거한 실적으로 풀이된다.

유형별 단속실적추세는 〈表 3－2〉과 같다.

〈표 3－2〉 **類型別 團束實績 趨勢**

(단위 : 인원)

區分 / 罪名	年度	密造	密輸	密賣	使用者(投藥)	取扱者(所持)	協助	其他	計
向 精	'90	23	11	234	1,158	94	3	34	1,557
	'91	10	16	297	602	46	13	173	1,157

통계자료, 대검찰청, 마약범죄백서, 1991. p.25

2) 히로뽕사용투약자 직업 및 발생지역의 현황

히로뽕 사범의 직업별 분포에 대하여 살펴보면, 1986년도에는 총검거인원 862명중 무직이 402명, 유흥업소종사 62명, 상업이 88명 순으로 농업, 공업, 어업, 연예인, 주부, 학생, 노동, 회사원, 운전사, 의사, 선원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고, 1987년도에는 총검거인원 1,459명중 무직이 695, 유흥업소종사자 121명, 상업 88명 순이었고 1988년도에는 총검거인원 3,320명중 무직이 1,675, 유흥업소종사자 상업 208명 이었고, 1989년도에는 총검거인원 1,994명중 무직이 789명, 유흥업소종사자 238명 상업 208명순으로 1990년 1,557명중 무직이 584명 유흥업소종사자 192명, 상업

157명이었으며 1991년도에는 총검거인원 1,157명중 무직 413명, 유흥업소종사자 120명, 상업이 99명순으로 5년연속 공통적으로 무직 유흥업소종사자, 상업인순으로 높은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의료인, 주부, 학생,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파급되고 있는 실상은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전국에게 골고루 침투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상세한 현황은 〈表 3－3〉와 같다.

〈表 3－3〉 히로뽕사범 年度別 職業別 現況

(單位：人員)

職業 \ 年度	'86	'87	'88	'89	'90	'91
計	862	1,459	3,320	1,994	1,557	1,157
無職	402	695	1,675	789	584	413
遊興業從事者	62	121	392	238	192	120
農業	10	9	28	13	20	9
工業	12	23	89	37	25	14
漁業	2	1	4	4	1	5
商業	88	126	208	218	156	99
演藝人	21	15	37	19	14	4
主婦	2	3	3	9	2	1
學生	－	1	34	11	5	2
勞動	8	10	58	36	23	16
會社員	17	26	56	57	55	36
運轉士	25	34	79	81	56	33
醫療人	39	59	25	100	107	191
船員	8	21	31	10	13	3
其他	166	315	601	372	304	211

대검찰청 마약백서 1991. p.41

다음으로 히로뽕 사용자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요공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지역이 전체 히로뽕중 1986년 42.2%, 1987년 42.4%, 1988년 61.4%, 1989년이 32.1%, 1990년 38.9%, 1991년이 30.4%로 전국에서 가장많이 검거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이 그다음 순으로 검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부산과 서울을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현상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에서 농촌 및 산간벽지 어촌에까지 파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현황은 다음 〈表 3-4〉와 같다.

〈表 3-4〉 히로뽕事犯의 地域別 단속現況

(單位 : 人員)

年度 / 地域	'86	'87	'88	'89	'90	'91
計	862 (100)	1,459 (100)	3,320 (100)	1,994 (100)	1,557 (100)	1,157 (100)
서 울	159 (18.4)	395 (27.1)	538 (16.2)	447 (22.4)	439 (28.2)	355 (30.7)
仁川, 京畿	42 (4.9)	71 (4.9)	86 (2.6)	233 (11.7)	126 (8.1)	108 (9.3)
釜 山	364 (42.2)	619 (42.4)	2,038 (61.4)	640 (32.1)	606 (38.9)	352 (30.4)
馬山, 慶南	98 (11.4)	125 (8.6)	222 (6.7)	185 (9.3)	102 (6.6)	84 (7.3)
大邱, 慶北	123 (14.5)	153 (10.5)	295 (8.9)	363 (18.2)	186 (11.9)	179 (15.5)
光州, 全南	4 (0.5)	28 (1.9)	27 (0.8)	52 (2.6)	22 (1.4)	23 (2.0)
全 北	7 (0.8)	15 (1.0)	7 (0.2)	20 (1.0)	11 (0.7)	11 (1.0)
江 原	13 (1.5)	10 (0.7)	28 (0.8)	6 (0.3)	10 (0.6)	4 (0.3)
忠 南	40 (4.6)	34 (2.3)	46 (1.4)	36 (1.8)	28 (1.8)	30 (2.6)
忠 北	4 (0.5)	9 (0.6)	13 (0.4)	6 (0.3)	23 (1.5)	4 (0.3
濟 州	8 (1.0)	–	20 (0.6)	6 (0.3)	4 (0.3)	7 (0.6)

통계자료 대검찰청, 마약백서, 1991. p. 49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가인 일본 및 선진외국의 히로뽕사범 검거추세를 살펴보면 범죄계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1991년을 대상으로 할때, 미국이 34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벨기에 91명, 영국이 77명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과거 히로뽕범죄 다발지역인 일본이 최근에 와서 현저히 범죄현상이 줄어들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마약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마련과 일본의 경찰이 전문적인 수사방법에 의해 마약범죄가 감소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각국의 히로뽕사범의 범죄통계는 〈表 3-5〉에 나타나고 있다.

〈表 3-5〉 各國 히로뽕犯罪計數

(단위 : 인원)

國 名	事 犯 數	痲藥類犯罪計數 (人口10萬名當)	基 準 年 度
미 국	869,155	346	1990
카 나 다	13,884	53	1989
칠 레	5,806	41	1990
페 루	2,540	11	〃
이 태 리	24,647	43	〃
영 국	44,922	77	〃
벨 기 에	9,119	91	〃
오 스 트 리 아	4,829	63	〃
이 집 트	9,388	18	〃
스 리 랑 카	12,264	72	〃
일 본	18,309	15	〃
한 국	3,133	7	1991

※ 통계자료, 대검찰청, 마약백서, 1991. p.327

3) 히로뽕사용 년령층의 다양화

히로뽕사범 년령층에 의한 사용빈도를 검거된 통계에 의하여 분석하여 보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공통적으로 20세에서 29세까지 20대가 23.1%, 30~39세까지가 36.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5세에서 19세에게 까지도 1.2%

라는 검거현황을 볼때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치않고 파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도별 히로뽕 년령별 현황은 〈表 3-6〉와 같다.

〈表 3-6〉 **히로뽕事犯의 年齡別 現況**

〈( )은 %〉 (단위 : 명)

年齡 / 年度	15~19	20~29	30~39	40~49	50~59	60歲 以上	未 詳
1986	10 (1.2)	199 (23.1)	313 (36.3)	137 (15.9)	63 (7.3)	20 (2.3)	120 (13.9)
1987	48 (3.3)	450 (30.9)	549 (37.6)	169 (11.6)	57 (3.9)	14 (1.0)	172 (11.8)
1988	219 (6.6)	1,434 (43.2)	1,176 (35.4)	285 (8.6)	52 (1.6)	11 (0.3)	143 (4.3)
1989	11 (0.5)	600 (30.1)	878 (44.0)	269 (13.5)	105 (5.3)	40 (2.0)	91 (4.6)
1990	13 (0.9)	371 (23.8)	724 (46.5)	246 (15.8)	108 (6.9)	23 (1.5)	72 (4.6)
1991	3 (0.3)	166 (14.4)	516 (44.6)	240 (20.7)	117 (10.1)	36 (3.1)	79 (6.8)

※ 통계자료 대검찰청, 마약백서, 1991. p.23

4) 再犯率의 增加

히로뽕의 강한 정신적 依存性으로 인해 히로뽕사범의 재범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히로봉사범의 재범율은 78년도 27.7%에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90년에는 63.9%의 재범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음 〈表 3-7〉과 같이 매년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치료와 사회복귀등 사후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초범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에 처하는 미온적인 경향보다는 엄한 형량이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表 3-7〉 在所者 히로뽕事犯의 年度別 再犯現況

(단위 : 인원)

年度別	累 計	既 決				未 決			
		計	初 犯	再 犯	再 犯 比率(%)	計	初 犯	再 犯	再 犯 比率(%)
'86	862	446	152	294	66	436	179	257	41
'87	1,459	1,277	447	830	65	628	339	289	46
'88	3,320	2,104	484	1,620	77	1,216	584	632	48
'89	1,994	1,098	242	856	78	896	439	457	49
'90	1,557	671	161	510	76	886	443	443	50
'91	1,157	461	97	364	79	696	369	327	53

※ 대검찰청, 마약백서, 1991. 자료통계임.

5) 검거되지 않는 히로뽕 사용자 추정인원과 전망

히로뽕 상용자는 잠재적으로 남의 눈에 띄이지 않게 은밀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추정하기란 어렵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가지 자료와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상용경험을 하였거나 중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92년 4월 21일에 천억대에 달하는 히로뽕 밀수범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18]김포세관에서 1백억대의 밀수범이 검거되었는바, 이는 수백만명 이상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량이며, 운좋게 발각되지 않는 물량을 감안할때 잠재적인 수요자가 상당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1991년 한국 행사정책 연구원에서 조사의뢰한 "유흥업소 주변의 습관성 중독물질 오·남용 실태[19]연구"에서 제시한 근거로 볼때도 114,501명이나 상용자가 있다는 연구결과의 실례로 보아, 앞으로 계속적인 상용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18) 서울신문17면," 수원지방검찰청 천억대 히로뽕밀수단적발" 1992. 4. 21

19) 김경빈, 법무연수원「유흥업소 주변 습관성 중독물질 오남용 실태」1991. p.137

2. 히로뽕사범의 일반적인 경향

최근 선진제국에서는 헤로인 및 코카인과 LSD 등 각종의 약물이 남용되어 여러가지의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성약물은 총기와 더불어 사회의 평온을 위협한 중대요인으로 평가되어 麻藥禍에 고민하고 있는 미국의 레이건 前대통령이 마약추방전쟁을 선언하였으며 많은 미국인들이 국제문제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마약문제일 정도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 히로뽕의 남용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 확산되고 있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음은 이미 기증사실화 되었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 히로뽕 사범의 악질, 巧妙化

우리나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상 제조사범의 법정형은 일본의 각성제 取締法上의 法定刑보다 훨씬 높게[20]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집행유예선고는 불가능하며, 제조범의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어 히로뽕 제조범은 검거를 모면하기 위하여 악질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고 추적을 벗어나기 위하여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실례로서 1988년에 발생하였던 이황순사건을 들 수 있는바, 이황순은 히로뽕 밀조·밀매로 얻은 막대한 이익금으로 제조공장 곳곳에 모니터 텔레비젼을 설치하여 수사관의 접근을 감시하기도 하고 공범자들 사이에 무전기를 사용하여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도 하며 마약 수사관들의 인적사항은 물론 사진까지 입수하고 때로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交替된 수사관의 인상착의를 체크하는 섬세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점조직망을 형성하여 사용자나 밀매사범이 검거되더라도 총 책등 상부

---

20) 1989. 4. 1 개정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40조 제1항은 히로뽕을 제조한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동조 제2항은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반면 일본 히로뽕 취체법 제41조 제1항 제2호는 각성제 제조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영리목적범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정상에 다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併科할 수 있다.

조직을 섬멸하기 어렵고 또한 검거되더라도 다량의 히로뽕을 조금씩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 유통시킴으로써 전량 압수 및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히로뽕 사범 중 항시 생선회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직전에는 필사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대항하는 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히로 히로뽕 유통사범은 차량 및 무선호출기(일명 삐삐)를 구입하여 기동성있게 다니며 수사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2) 히로뽕 投藥계층의 擴大

히로뽕의 투약은 종래의 특수계층에서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농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층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히로뽕 투약사범의 연령층이 하향화 추세에 있어 성장기 청소년들의 투약이 전체사범의 1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점차 늘어나리라는 전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21]

실례로 수사를 하다보면 10대의 경우 호기심만으로 히로뽕투약을 시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알 수 있고 또 이들이 전자오락실 유흥업소등지에서 쉽게 히로뽕을 구입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이야말로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3) 密賣루트의 광역화

過法에는 히로뽕의 밀조장소와 밀매장소가 근접된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거래와 밀조, 거래와 투약을 離隔함으로써 그중 한 사람이 검거되더라도 다른당사자의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제조는 부산에서, 거래는 서울에서』식의 원거리 유통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조는 서울에서, 거래는 일본에서』라는 국제거래방식을 택함으로써 수출사범이 일본에서 검거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제조범 내지 밀매범은 검거하지 못하거나 검거되더라도 『물증없는 수사』로 끝나버리는 수가 있다.

---

21) 실제 미성년자들은 고고장 나이트클럽, 전자오락실, 주점등을 출입하면서 히로뽕 소매상과 연결되어 히로뽕을 투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퇴폐업소에 대하여는 거국적인 단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4) 히로뽕 中毒者에 의한 환각범죄의 격증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히로뽕 중독자들이 인질난동,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소위 환각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여 종종 텔레비젼이나 신문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 발생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 요소를 만들고 있다. 히로뽕의 투약과 타범죄와의 관련은 대개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1) 히로뽕중독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불안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에서 이를 탈피하고자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

(2) 강·절도·강간 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사전에 히로뽕을 투약한 후 그 범행을 하는 유형.

(3) 히로뽕구입자금을 얻기 위해 강·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을 들 수 있다.

위(1)의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1988. 3. 1 부산 피닉스 호텔에서 발생한 인질난동 사건이다[22].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즉 피의자가 1988. 2. 2 절도죄로 만기출소한 후 히로뽕을 계속 투약하여 오던 중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공포에 시달리자 사건 당일 피닉스 호텔 커피숍에 들어가 여종업원목에 칼을 들이대고 두 시간 동안 인질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2)의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988년 1월 10일에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을 들 수 있는바 피의자 두명이 강도를 모의한 후 히로뽕을 투약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식칼로 동인을 위협하고 금반지 등을 강취한 사건이다.[23]

(3)의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강·절도범의 罪質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범행동기를 허위로 진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

22) 부산중부사건, 제148호, 1988. 3. 2

23) 부산진사건, 제11호, 1988. 1. 11

실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히로뽕사범의 실제 검거현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상 히로뽕 상습 투약사범의 수는 약 1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므로 우리사회는 히로뽕사범에 의한 환각범죄의 가능성에 상당할 정도로 노출되어 그 위험성의 큰 상태에 처해 있다.[24]

따라서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물론 국민 모두가 대대적으로 히로뽕을 추방하기 위한 비상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4) 김경빈, 「유흥업소 주변의 습관성 물질 오남용실태」 1991. p.87

3. 히로뽕 事犯의 捜査行政 體制

히로뽕 사범의 사전예방과 수사상의 효율화, 수사체제의 조직화 재발의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수사체제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수사행정체제를 살펴본 후 참고로 선진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한국

1) 檢察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 수사기관으로는 검찰, 경찰, 보건사회부 마약감시사무 및 세관을 들 수 있다.

그 중 마약류사범 수사의 중추기관은 검찰로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두고 전국 검찰을 지휘는 물론 범 정부적인 수사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마약감시원은 管轄地域 검찰청에 파견되어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활동을 하고 있어 사실상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활동을 하고 있어 검찰의 일원으로서 수사에 임하고 있다. 방대한 인력과 정보망을 가진 경찰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사경험부족과 수사미숙, 전문수사능력부족 현실때문에 경찰세관등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지휘를 철저히 하고 마약류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신속히 보고받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어 검찰은 1989. 2. 13일 대검찰청 마약과 신설과 함께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사는 명실상부하게 검찰이 중추적 기능을 맡게 되었다.[20]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며 사범의 신병처리 등에 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수출입품에 대한 검문·검색 등을 통하여 밀수사범 중심의 수사를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보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

20) 법무연수원, 문효남,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대책」 p.87

2) 경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방대한 조직과인력을 보유한 경찰기관이 마약수사의 중추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9년 4월 1일에 중요 시급 이상 경찰서에 전담요원을 지정하게 되었고 1990년에는 경찰청 형사국에 마약 전담반을 두었으며 1992년에는 마약계로 조직이 격상되고 각 지방경찰청에는 마약반을 운용하고 있는바, 79개 경찰서 등에 전담요원을 확충하여 경찰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부산에서 히로뽕사범의 발생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경찰이 마약류 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것은 1988년 4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산시경 및 10개 경찰서의 마약전담반에 대한 마약류사범 수사교육을 실시하고 T.B.P.E 소변검사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대행하여 줌으로서 검찰과 경찰의 연대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25]

그러나 문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마약문제에 있어서 선두적 역활과 마약수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데 있으며, 이는 전문수사요원이 양성되지 못했고 수사업무가 전문화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때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사이의 어떠한 제도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찰자체내의 능력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은 마약수사가 아닌 일반수사문제에 있어서 수사전문화 및 자질향상 방안으로 직무보수교육 강화는 물론 수사, 조사요원 경사, 경위, 경정계급을 임용해주는 조건으로 일부요원을 특채 영입하는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에 불과 지속적인 요원 관리가 되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방법이 1회용으로 될 수 밖에 없었든 것은 경찰수사업무 성격상 철저한 경험과 경륜이 요망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이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니고 감독자로 출발하기 때문에 수사능력문제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찰자체내 계급 구조서열 및 보직문제에 있어서 한계급만 더 상위계**급으로 진급하면 한정된 보직에 의해 수사보직에서 더이상으로 지속하지 못하고 수사보직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이다.

25) 문효남, 법무연수원 "마약류사범 수사실무상의 제문제" 1989. p.83

이러한 경향은 결국 기존 요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존요원은 근무여건이나 봉급수준, 장래승진문제 등이 열악하고 빈약한 처우때문에 고심하고 있으며 이는 채용과정에 있어 우수한 인력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지·파출소에 배치되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수사요원으로 차출, 능력이 있든 없든 수사업무를 맡겨야 하는 오늘날의 수사경찰의 양성과정과 능력상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경찰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안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마약정책은 그 성격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수사행정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방대한 인력과 정보망을 가진 경찰이 최일선에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검거하며 방어할 수 있는 수사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검찰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후방지원 행정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체제를 개선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경찰이 스스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수사요원의 채용과 인사, 관리 등의 행정제도상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요원채용과정은 단순화 및 단일화시켜야 하고, 수사요원의 인사관리, 보직관리 등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경찰자체 내부의 수사행정체제의 일원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행정체제의 개선은 상하간, 계급, 년령, 경륜 등이 피라밋형 조직형태가 형성되어 상명 하복하는 계급사회의 강력한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자체사고는 물론 수사운용면에 있어 지휘권이 확립되고 법운용의 정확한 수사행정체제가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행정체제가 개선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현실적인 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수사 인력지원자를 확보하는 문제다. 또한 우수 자원을 조직내로 유인시켜야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사서비스 제공 및 법적 보호를 해줄 수 있다.

위와같은 기본적인 제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상교육을 통한 수사 능력 배양은 소극적이 되고, 수사요원들의 독직, 인권침해, 탈법수사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예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나 정부기관에서는 막연하게 경찰을 질책하거나 잘해주기를 요구하는것 보다 수사경찰에 대한 과감한 투자 즉 처우개선부터 실행되어야 올바른 수사행정체제가 될 것으로 본다.

(3) 보건사회부

마약과에서 마약 단속을 하나 '89. 2. 13. 마약감시원이 검찰로 이체된 이후에는 합법 마약관리와 마약 사범치료 등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별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관계 등 대외창구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사부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4) 세관

공항, 만 등에서의 밀수 관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견을 운용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별 사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美國

(1) 마약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마약청은 법무부 내에 설치된 연방경찰조직으로서 미국에서의 마약류 수사 및 단속의 중추기관이다.

미국에서 마약류의 남용이 극심해지자 1973년 종래의 마약류에 대한 규제와단속을 담당하던 재무부의 마약국, 보건후생부의 약물남용규제국을 통합하여 법무

부에 설치한 기관이다.

마약청은 마약류문제에 관해 국제기구 및 회의에서 미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제조·밀수 대규모거래중심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경미한 사건은 지방경찰에 위임하여 주, 지방경찰의 마약류사범 수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아울러 담당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제조·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마약류 남용방지 및 국내·외 경찰관의 훈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본부 밑에 미국내 19개소에 지방청과 101개소의 지청을 두고 있으며 7개의 지방법의학실험실, 1개의 특수 시험연구소 및 미국 전역을 담당하는 1개 비행대 등을 두고 있다. 또한 해외 41개국에 61개소의 사무소를 두어 195명의 수사관과 보조요원 103명을 두고 있다.

마약청 직원 수는 91회계년도말 현재 특별수사관 2,286명, 행정기술직 2,106명 등 모두 4,342명이다.

(2) 이민귀화국(Immigrations and Naturalization Service)

이민귀회국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단속 수사업무 및 귀화심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며 특히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를 단속·수사하기 위하여 약 2,200명의 순찰대원으로 구성된 국경순찰대(Border Patrol)를 두고 있다.

(3)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은 연방범죄에 대한 수사 및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지원등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성 산하 수사기관이다.

연방범죄 중 조직 범죄 중심의 마약류 사범은 FBI가 수사하고 있다. 직원은 총 2만명이다.

(4) 기타

재무부의 국세청은 탈세수사를, 연방관세청은 밀수사범 수사를 담담하면서 이와 관련된 마약류사범 수사를 함께하고 있으며 운수부 소속 연방연안 경비대는

해상에서의 각종 사범 단속업무와 관련된 마약류 사범 수사를,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에 소속 경찰은 독자적으로 또는 마약청의 지원하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日本

일본에 있어서의 마약류사범 수사기관은 경찰 후생성 소속 마약 취재관사무소, 세관,해상보안청 및 법무성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사범 단속 및 수사의 중심은 경찰이다. 일본에서 경찰이 마약류 수사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로는 마약관계법령의 적절한 개정 및 관계행정부처 사이의 효과적인 연락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약류사범을 단속하는 여러 기관 사이의 조정 연락을 위한 '약물亂用대책추진본부'가 설치되어 있다.[29]

(1) 警察

경찰은 마약수사를 포함한 범죄수사의 전영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마약류사범 검거에 총 검거인원의 98%를 차지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UN에서 주최하는 마약관계회의도 경찰청과 외무성이 중심이 되어 열고 있다.

경찰이 마약류사범 수사에서 중심을 차지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전국적인 조직과 많은 인력을 들 수 있다. 일본 경찰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24만명에 이르며 그 조직은 중앙기관인 경찰청을 정점으로 하여 都, 道, 府, 縣경찰, 그리고 말단파출소·주재소에 이르기 까지 정보·수집 시작단계부터 일원화 수사가 가능하다.

둘째, 경찰관 개개인의 수사능력이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세째, 전과자의 지문, 폭력단의 자료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 유치시설 등이 타기관에 비하여 우수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찰청 보안부 보안과 약물대책실은 일본경찰에 있어 마약류 단속의 중추기관으로서 마약류사범의 단속에 관한 조사, 기획, 마약류 濫用防止에 관한 업무, 마

약류 사범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연락·조정업무, 마약류 사범의 국세정보교환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마약류사범수사는 국가적 관점에서 실시되어야만 하므로 마약류사범에 관한 정보는 모두 경찰청에 보고되며 마약류사범의 수사에 관한 장비, 자재, 수사, 광역화된 각성제사범 수사 소용비용도 모두 경찰청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2) 후생성 마약취제관 사무소

후생성은 합법적인 마약류에 대한 규제를 주된직무로 하고 있으며 단속기관으로서 전국에 8개의 마약취제관을 두고 있다.

(3) 세관

세관은 일본전국에 지서, 출장소를 두고 관세업무 등을 행하고 있다. 마약은 세관정산법에 의하여 수출입금지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약의 밀수출입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직원에게는 마약 등 수입금지품, 기타 불법물건의 수입행위에 관하여 검문·검색·압수·수색등의 권한은 있으나 사법적 권한은 없으므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4) 해상보안청

해상보안청은 약 12,000명의 직원이 있으며 해상에서 행하여지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해난구조 등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해상보안청에 의한 마약류사범 수사는 제2차적인 것이다.

또한 법무성에 출입국관리국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국하는 일본인 및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다.

(5) 법무성

법무성에 소속된 검찰관은 스스로 범죄수사를 행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범죄의 訴追가 검찰관의 주된 임무이므로 마약류사범 수사는 제2차적인 것이다.

또한 법무성에 출입국관리국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국하는 일본인 및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다.

第 2 節 히로뽕事犯　搜査上의 問題点

히로뽕은 국민에게 미치는 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에게 히로뽕의 위험을 충분히 주지시켜 이에 손대지 않도록 홍보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그 근원을 잘라내야 한다.

또 중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히로뽕을 끊도록 함은 물론 정부관계 기관이 서로 提携하여 각 분야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히로뽕과의 전쟁에서 사범의 검거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야 말로 주전 부대라고 말 할 수 있다.

히로뽕 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사범은 약물중심의 조직범이므로 수사관으로서는 우선 약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검거하여 이를 돌파구로 하여 조직의 상부 혹은 하부까지 追及搜查함으로써 조직의 궤멸을 도모하는 것이 히로뽕 사범수사의 기본원칙이다.[27]

이러한 수사상에 있어서 문제점은 어떻게 약물을 획득할 것인가, 다음에 蒐集한 약물을 어떻게 이용하여 수사를 전개시킬 것인가, 더욱이 약물을 압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범죄사실을 입증할 것인가가 중심과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수사실제상의 실제적 문제로는 히로뽕 경시경향, 수사예산의 확보곤란, 정보원의 활용상 문제, 연안 봉쇄의 난점, 경찰수사체제의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고 이론적 문제로는 약물 임의 입증, 물증없는 사건의 입증, 否認 사건의 입증, 尿검사, 함정수사, 사건의 입건 등이 있으며 제조, 유통소지, 사용투약 등 히로뽕 사범 유형별 수사방법상의 문제점도 있다.

1. 搜查 理論上의 問題点

1) 히로뽕 藥物임의 입증상 어려움

히로뽕은 무엇보다도 당해 약물이 히로뽕인가 아닌가가 先決과제이다. 이것은 일반인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과학적인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야 하는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어야 할

---

27) 孔昌喜, "각성제사범에 대한 수사업무상 문제점" 「검찰」1984. p.159

상황이라도 정확한 약물의 성분을 밝혀내야 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업무추진상의 난점이 있다.

2) 物證없는 사건의 立證關係

약물 거래에 관여한 다수의 讓渡·讓收 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도 거래에서 압수된 히로뽕이 어느 거래의 대상이 된 약물인가에 대하여는 입증할 수 없는 경우와 양도·양수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상당한 時日이 흐른 후 범인이 검거됨으로써 물증인 그 히로뽕을 압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또는 주사를 맞은 범인의 뇨로부터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는 대체로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해 직접 이것을 뒷받침할 약물이 존재하지만 그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것을 직접 증명할 약물이 없는 경우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약물의 존재를 추인시킬 정도의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범죄사건으로 입증시켜 주느냐의 문제가 있다.

3) 否認 사건에 대한 立證문제

일반적으로 어느 사건이든 피의자 또는 범법자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히로뽕 사범도 날로 악질, 교묘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증거가 없는 한, 절대적으로 자신이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하는 추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입증시켜 자백을 받아 내느냐가 문제이다. 수사관은 증거수집으로 자백 및 증거가 왕이라고 하지만 피의자는 否認이 왕이라고 하는 관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4) 뇨검사에 관련한 임의성 확보 관계

히로뽕 사범, 사용자에 대한 증거 채택상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방법이 뇨검사인데 사실 뇨검사 자체도 사용시간 경과나 사람의 체질·연령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상 뇨채취 방법이 문제이다.

자발적으로 뇨를 보지 않을 때 강제적인 수사방법을 채택할 것이냐, 임의적 수

사방법으로 할 것인가, 강제적으로 할때 어떻게 체외로 검출해 낼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한 뇨 채취 후 감정 결과 유사물질과 동일하게 검출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5) 함정수사와의 관계

함정수사는 수사관이 일반인으로 가장하여 혹은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이 실행하는 순간 검거하는 방법인데 일반 수사에서는 존재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히로뽕 사범의 중요성을 볼때 함정수사를 실행하여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2. 搜査 실제상의 문제점

1) 히로뽕事犯의 輕視 경향

우리나라의 히로뽕 사범은 복잡한 사회속에 잠재적으로 10여년간 잠복기를 거쳐 최근에는 급속히 확산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를 체감하지 못한 국민 및 관계기관에서 인체에 미치는 약리적 작용 및 해독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범 자체를 경시화 했던적이 있었다.

또한 자신이 해당되지 않으면 무관심한 사회현상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될수 있고 사회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히로뽕 사범에 대한 망국병의 인식을 피부로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약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함께 동참해야 하나 사회적으로 약물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소외계층, 향락산업의 팽창 등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경시되고 있다.

2) 수사 예산의 확보 곤란

마약수사범에 대한 수사 활동비는 현실정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화폐가치의 하락, 물가상승 등에 대비한 너무나 적은 액수의 수사비는 수사활동을 간접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히로뽕 등 마약류 사범 수사에만 쓸수 있는 별도 예산은 없고 일반 수사비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인식하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3) 정보원의 활용상 문제

히로뽕 사범은 정보원 없이는 수사가 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 히로뽕 사범에 관련된 정보원을 활용, 사범 수사에 접근하고 있으나 이들이 수사관을 업고 악용할 경우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정보원 활용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의한계는 결국 수사관 자신에게 맡겨야 하나 수사관 자신도 인간인 이상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4) 연안 봉쇄의 난점

히로뽕 원료는 전량 일본, 태국, 홍콩, 대만, 독일 등에서 밀수입해 오는데 밀수 루트도 전부 공해상에서 연안 선박으로 접선, 해안에서 고기잡이 또는 낚시꾼으로 가장, 인수·인계되어 해안선을 이용 상륙되고 있으나 망망해역에서 감시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해군·해양 경찰대가 있으나 히로뽕 수사가 그들의 주임무가 아니고 히로뽕 사범에 대한 현물 감정 등 전문지식이 없어 전적으로 봉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5) 경찰 수사 체제의 미흡

대검찰청에서는 마약류사범 수사에 관한 정보 및 수사의 일원화를 기하고 유기적인 각수사기관의 심층수사를 펴나가기 위하여 '마약 합동수사반 설치'에 관한 사무규정을 전국의 일선 검찰에 시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예규에 의하면 대검찰청에 전담검사를 두고 각지방검찰청(지청포함)에 전담검사를 두며 각 지방검찰청은 전담검사 밑에 마약사범 단속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마약사범 전담단속반을 편성한 후 각 전담검사는 관내의 모든 정보를 집중관리하여 이를 분석·평가하고 수사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하는 동시에 관내의 일체상황을 대검 전담검사에게 조속히 보고하여 각 본·지청 마약사범 전담검사

밑에 관할지역내에 있는 각 시·도 주재 보사부 마약감시원, 海·空검역소 마약감시원, 세관 직원 및 전담경찰관 등 적절한 인원을 총망라하여 단속반을 조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전국의 일선 검찰에 합동수사반을 설치, 운용하고 대검 마약과의 수사요원에게 전문교육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며 수사에 박차를 가해 지난 89년 부터 많은 성과를 거둬 유한농장파, 피터팬파, 최재도파, 동원목장파, 차영수파 등 모두 29개파 269명에 달하는 밀수조직을 적발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28] 전국적인 수사조직과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야 하나 수사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때문에 전체 마약 사범의 99%를 검거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찰의 검거율은 저조한 편이고 밀조범이나 밀수범을 검거한 사례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사례로 1991. 10. 26 송파 경찰서에서 적발한 의사, 기업인등의 복용사건도 폭력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얻은 부산물이었을 따름이다.

결국 전담요원 자신이 마약류 및 히로뽕사범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수사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시가 있을 때나 또는 타 업무에 쫓겨가면서 수사를 전개하고 있어 실적이 부진하다. 또한 수사를 실제로 현장에서 맡아야 할 종사원을 양성해야 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전문적인 마약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업무추진면에 있어서

기존 수사요원들의 수사기피 현상도 문제이다.

수사업무를 외면하는 이유에는 업무량이 과다한 것도 있겠으나 징계등 위험부담이 항시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 승진이 잘 안되므로 수사업무자체를 기피한다.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간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사간부는 간부 나름대로 수사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장수사는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수사간부가 필요하나 경험과 이론중 어느 한쪽이 없는 절름발이 감독자가 대부분이다.

---

28) 대검찰청 마약백서, 1991. pp.46~50

이에따른 실례로 88. 8. 1기준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전체 경정급 49명, 경감급 27명을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활용 수사경력 현황을 알아 보겠다[30]

〈表 3-8〉 경정·경감급 수사경력현황

(단위 : 인원수)

계 급 별	총 계	수사경력년도	인 원	비 고
경 정	49	1년미만		
		1년~2년		
	14	2년~3년	14	
		5년~10년		
	2	10년이상	2	
	33	없음	33	
경 감	27	1년미만		
		1년~2년		
	6	2년~3년	6	
		5년~10년		
	2	10년이상	2	
	19	없음	19	

29) 부산시경, 88년 하반기 수사간부 연수 입교차출 대상자 선정 발굴심사에 따른 부산지방경찰청 통계자료표에 의거 재구성.

위 〈表 3－8〉에서 보듯이

전체 경정급 49명중 수사 경력자가 16명이며 16명중 수사근무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2명이고 그외 14명은 평균 2년이며 나머지 33명은 수사경력이 전혀 없다. 경감급 27명중 수사경력자가 8명이며 8명중 수사근무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2명이고 그외 6명은 평균수사 경력이 2년3개월에 불과하다. 나머지 19명은 수사경력이 전무하다. 그나마 수사경력이 조금있는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좀처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사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화된 요원이 수사간부로 승진되지 않고 수사부서가 아닌곳에서 승진이 되어 단기보직에 불과한 근무경력의 일례로 분석할 수 밖에 없다.

3. 수사 방법상의 문제점

일반범죄 수사방법에도 고도의 육체적·정신적 이론과 철저한 경험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히로뽕 사범에는 태양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수사가 곤란하다.

아직 우리나라의 수사종사자들은 일부전담요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약리작용 및 히로뽕 성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단계에 있고 제조사범과 국내외에 관련되는 수출입 유통사범에 대해서 수사방법의 미숙으로 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각 사범의 태양별로 전문화된 기술로 조직적인 국제화 범죄에 대처함이 필요하고 上線에 위치한 제조·유통사범 검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방법을 조속히 개발, 모든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전수관이 마약전문요원화하여야 하고 시민들의 막연한 제보나 운이 좋지않아 걸려든 히로뽕사범 수사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第 4 章 히로뽕 事犯의 搜査上 문제점에 대한 改善方向

第 1 節 搜査 理論上의 改善方向

1. 히로뽕 약물의 입증방법

히로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容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해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히로뽕인가 하는 것이 중심이고 선결과제임은 물론이다. 문제가 되는 약물이 히로뽕인가의 여부는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판명함으로써 해결될 문제이고 일반인의 推斷을 허용치 않는 과학상의 문제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이고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까지 그 예외가 허용되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히로뽕 사범에 있어서는 일시에 다량의 히로뽕이 압수되는 경우와 小分등 분할된 것이 다수 압수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압수한 전 물건을 전문적인 감정에 의하여 히로뽕을 입증하는 것은 煩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동일 제조자가 동일 원료, 기구,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이거나 동일인으로 부터 양수한 것을 소지하고 있었던 동종, 동질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압수한 전약물에 대해 감정할 필요가 없고 압수 된 히로뽕이 감정에 의해 히로뽕임이 판명되면 그 결과에 따라 全押收物을 히로뽕이라 판단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둘째, 감정의 결과만으로 히로뽕의 품명까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 기타의 증거로 히로뽕임을 인정하여도 지장은 없다.[30]

세째, 압수되어 있는 약물에 대하여 피의자가 히로뽕임을 인정하는 진술이 특히 신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시 감정에 의하지 않고 히로뽕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약물이 압수되어 있는 이상 적어도 그 일부에

---

30) 東京高裁, 昭和30年(1975년), 3月 30日 : 감정결과 헤닐메틸푸로판과 類似의 반응을 나타낸 물질을 검출했으나 반응 불충분으로 품명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히로뽕이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하여 신빙성 있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각성제임을 인정하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수사의 正道임은 말할 나위없다.[31] 위와같이 전문적인 감정을 받기 이전에 실시하는 예비시험이 있는 바 이 시험 결과에 의하여 히로뽕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마약수사관들은 주로 미군범죄조사대에서 제공되고 있는 시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시몬시약을 사용하는 방법과 마르키스시약을 사용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다.[32] 어느경우이든 이들 방법에 의한 검사는 감정에 임하기 전에 히로뽕임을 일단 인정하기 위한 편의상 방법으로서 혐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제공함에 불과하므로 이에 의하여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하여 정식의 감정을 생략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특히 압수된 히로뽕이 사용후의 주사기에 국소량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부착물을 소비함으로써 정식 감정이 불가능하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시험을 생략하여야 함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物證없는 事件의 立證方法

거래에 관여한 자들이 다수의 양도, 양수 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도 거래에서 압수된 히로뽕이 어느 거래의 대상이 된 약물인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내지 양도, 양수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전파되어 범인이 검거됨으로써 그 히로뽕을 압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또는 주사맞은 범인의 尿로 부터도 감정에 의하여 히로뽕을 검출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소위 '물증없는 사건'이라고 한다. 이 경우 약물의 증거없는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관계인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과연 증명이 충분하다

---

31) 東京高裁, 昭和26年(1971년) 7月 20日 : 감정에 의하지 않고 약제사 자격을 가진 자의 해당물건이 마약이라는 취지의 자백에 의하여 마약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한다.

32) 시몬시약은 20%의 탄산나타륨 용액, 50%의 아세트알데히드 에탄올 용액 3%의 니트로부리짓 나트륨 용액의 3종류 약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방법은 미량의 試料를 呈色板 위에 놓고 물 한방을을 가하여 용해한 뒤에 위의 용액을 가하여 헤닐메틸아미노푸로판이 존재하면 즉시 청색 혹은 청남색으로 변한다. 한편 마르키스시약은 유산(硫酸) 3ml에 호르말린 2~3방울을 가하는 것으로 시료중에 헤닐메틸아미노푸로판이 존재하면 등적색 혹은 練互赤色을 나타낸 다음 汚橙色을 거쳐 汚綠色의 반응을 나타낸다.

고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물증없는 사건'은 ① 대체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 직접 이를 뒷받침할 약물이 존재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증명할 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범죄사실에 대하여 직접 이를 뒷받침할 약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일부에 대하여 약물이 존재한 것을 推認시킬정도의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③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①②에서 말하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犯罪 사실의 一部에 대하여 藥物이 존재할 경우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해 직접 이를 뒷받침할 약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실무상 흔한 실례이다. 예컨대 甲－乙－丙간에 여러번에 걸쳐 히로뽕이 양도, 양수되었으나 최종 거래에 대하여 乙이 丙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히로뽕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됨으로써 그 이전 거래에 상응한 약물은 이미 소비된 경우에 양도인, 양수인(소지인) 등 관계인의 진술 및 거래의 대상이 된 약물과 동일 내용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회수 약물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전거래 약물이 히로뽕이라고 인정하는 것인 가능하므로 이에 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판례도 이를 首肯하고 있다.[33] 다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약물이 존재하는 등 동일 내용의 약물을 거래하고 있던 것이 증거상 명백히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점이다. 예컨대 甲이 X,Y로부터 각각 수회에 걸쳐 약물을 양의 양수에 대하여는 약물이 압수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X와 Y가 동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여 A에게 양도 되었거나 혹은 A가 Y로 부터 양수받은 약물을 다시 말단에게 양도하여 그 자로 부터 약물이 압수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A와 Y간의거래 물건이 약물임을 인정하기에는 보통 곤란한 것이다.

2) 藥物은 존재하지 않지만 藥物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推認시킬 과학적 證據가 있는 경우

예컨데 약물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약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인시킬

---

33) 名古屋高裁, 昭和 30年(1975年) 4月 28日 : 피고인 및 관계인이 히로뽕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감정결과 헤닐메틸아미노푸로판을 함유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모두 히로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로는 히로뽕 소지사범에 있어서 히로뽕은 타에 처분하여 없지만 이를 넣은 봉투가 압수되어 여기서 미량의 히로뽕 분말이 부착되어 있다든가 施用 사범에 있어서 히로뽕은 주사를 맞아 잔존하지 않으나 주사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주사 후 배설한 오줌에서 나온 반응을 기본으로 위각 소지자, 사용자의 처분 전에 히로뽕 소지,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실무상 적극 활용되고 있고 판례도 적극적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34] 다만 주의할 것은 특히 사용사범에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사용사실을 포괄적 하나의 범죄가 아닌 실체경합의 관계에 있는 한 오줌으로부터 顯出된 약물반응 결과는 최후 사용사실의 인정에만 供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오줌에서 반응이 나타나는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犯罪事實 전체에 대하여 藥物 및 그 존재를 推認시킬 과학적 증거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

예컨데 히로뽕 施用사범에 있어서 약물이 주사함으로써 없어졌음은 물론 주사기, 봉투, 봉지, 오줌반응 등 약물이 존재하였음을 과학적으로 달리 추인시킬 증거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약물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거나 추인시킬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여야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데 그렇지 못한 위의 경우 그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즉 '物證없는 사건'에 있어서 사회질서 유지와 공소유지와의 상호가치가 相衝하는 모순이 생긴다. 이 경우 약물이 히로뽕인가 하는 인정은 반드시 직접 그 사건에 대한 과학적 감정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고 관계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그 물건이 히로뽕이였음을 인정할 고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인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판례도[35]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관계인이 히로뽕을 취급한 바 있는 의사, 약사, 제약회사의 사장이 중독자로서 관여하

---

34) 東京高裁, 昭和 31年(1976年) 2月 22日 : 마약 25G을 소지한 사인에 대해 자백외에 피고인이 마약을 넣어 사용하던 약 봉투가 압수되어 거기서 반응이 검출되면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한 사실의 보강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35) 飛田請弘, 松浦恂澤,「히로뽕 사범과 그 수사」日世社, 1984年 p.192

고 있는 등 情況 증거로서는 약물이라고 인정할 고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의를 요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안이하게 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약물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약품의 전문가 혹은 히로뽕의 사용경험자가 자기가 사용·검사 또는 본 결과에 따라 히로뽕임을 판단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이들 진술 자체가 충분한 합리성을 가진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해 거래에 관계한자 전원이 거래의 대상물이 히로뽕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히로뽕 이외의 약품이라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否認事件의 立證方法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히로뽕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어 있어 수법은 날로 악질, 교묘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히로뽕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으로써 특히 부인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히로뽕사범을 조사할때의 부인하는데 있어 일반의 부인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의자를 설득하여 자백을 유도하는데 노력하고 자백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황증거 수집에 주력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약물사범의 부인사건은 어느 정도의 증거를 집적해야 하고 범죄사실의 특정을 어느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선 사례에 의하여 정황증거에 의한 범죄사실의 인정의 긍정된 사례를 본다. '갑의 증언에 의하면 1992. 2. 1 오후 2시 10분경 직장내에서 증인을 의시하고 있는 거동이 수상한 피고인을 보고 있자 피고인이 직장내의 오락실에 들어가므로 증인도 뒤따라가 피고인의 성명, 근무지를 물어본 즉 반항적 태도로 나오므로 증인의 사무실로 동행하도록 말한 바 피고인은 증인을 뒤따라 왔고 그때 셀로판지를 만

지는 소리가 나기에 뒤를 보니까 피고인이 좌측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뺀 직후 사무실 문에 무엇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소리가 나 셀로판지를 주워보니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진술과 기타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소지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36] 피고인이 헤로인 주사를 위하여 사용한 흔적이 있는 미량의 헤로인이 부착되어 있는 셀로판지를 소지하고 있었고 팔에 다수의 주사량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주사기 등은 A로부터 페니실린 주사를 위하여 얻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를 신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증명이 충분하다.[37]

위의 사례는 정황증거가 비교적 갖추어져 있는 경우이고 실무적으로 위와같은 정황증거가 갖추어져 있으면 기소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히로뽕 사범의 부인사건의 대부분은 그러한 증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히로뽕 소지자를 검거한 뒤 소위 추급수사에 의하여 제조사범을 검거하였으나 제조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제조자로부터 약물을 양수한 범인에게 양수한 경위를 상세히 조서화할 필요가 있고 압수된 히로뽕와 동종, 동질의 히로뽕이 제조범 주변에 은닉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수색을 함은 물론 제조범의 평소 출입 거처를 확정함으로써 제조기구 일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 히로뽕 사용죄에 있어서도 그 대부분이 주사방법에 의하여 自家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피의자의 신체에 있는 주사량은 주사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전문가에게 감정시키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피의자의 오줌에서 히로뽕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끝까지 사용사실을 부인할 경우 범죄의 일시·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경우 히로뽕가 보통 48시간 이내에 70~90% 가량 오줌에서 배출되므로 그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최종 사용일을 특정하고 피의자가 상용자이면 가족 등으로부터 1회의 사용량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특정할 것이며 장소도 피의자가 자주 출입하는 곳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

36) 福岡高裁邢霸支部, 昭和 29年(1974年) 3月 25日

37) 札幌高裁, 昭和 28年(1973年) 10月 29日

4. 뇨검사 방법

히로뽕 사용죄의 수사는 범인이 히로뽕을 그 용법에 따라서 사용한 사실을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므로 수사의 중점은 보통 인체에 히로뽕 성분이 섭취된 사실을 입증하면 수사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체에 히로뽕 성분이 섭취된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혈액감정에 의한 방법 땀의 감정에 의한 방법, 뇨의 감정에 의한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혈액중의 히로뽕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주사에 의한 히로뽕의 시용을 받고 난 뒤 30분 정도로 되어 있고 땀에서 히로뽕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한 땀을 채취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어 실제 운용면에 애로가 있음에 반하여 뇨검사는 인체에 흡수된 히로뽕성분이 반드시 배출되고 뇨는 감정자료로서 충분한 필요량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이종사범의 수사에 있어 매우 확실한 직접증거로서 사용되는 고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38] 따라서 뇨감정의 전제가 되는 히로뽕이 뇨중에 배설되는 구조에 따른 뇨검사 방법, 강제채뇨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히로뽕의 뇨 중 배설구조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구투약의 경우에는 소화기계 장기에서 인체에 흡수되어 혈액에 이행되고 혈관주사의 경우에는 그대로 혈액에 이행되어 이것이 혈액의 흐름에 따라 매우 빠른 속도로 각 장기에 진행시켜 그 일부가 인체에 대해 이물질이기 때문에 체외에 배설하려고 하는 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면 히로뽕 전부가 뇨중에 배출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하는 가 또 히로뽕은 인체 안에서 대사에 의하여 어떤 화합물로 변화되는가가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하여 영국의 urium연구소에서 건강한 2인의 인체에 각각 각성제를 경구투여한 실험결과가 보고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투약 후 24시간 이내의 뇨중에는 투여량의 55~59%가, 48시간 경과 후의 뇨중에는 21~23%가, 48시간부터 72시간 경과 후의 뇨중에는 4~8%가. 72시간부터 96시간 경과 후의 뇨중에는 2~3%가 각각 배설된 것이 확인되어 결국 투약 후 4일째 까지는 투여량의 55~96%가 뇨중에 배설되고 이들 배설된 물질에 히로뽕인 메쓰암페타민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외 암페타민파라하이드로카시 등의 대사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위의 경우는 1회 경구투여한 경우이고 연속적으로 투여한 동물실험 결과에 의하면 배설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본에서 3개월

---

3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약동물과 및 마약분석실 분석자료, 1991. 10

에 걸쳐 주사 사용한 19명에 대하여 체포직후부터 매일 그뇨의 제출을 받아 뇨중의 히로뽕의 감정을 한 결과에 의하면 그 중 3명이 체포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양성반응이 누출된 점으로 보아 히로뽕을 사용하고 나서 2시간 정도는 그 사용자의 뇨중에서 히로뽕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화되어 있고 범인의 체질, 사용량, 사용빈도 여하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도 뇨중에서 약물이 검출된다고 상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39]

다음 뇨감정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널리 상용되는 방법으로는 ① 박층크로마트그라리법(TLC) ② 개스크로마트그라리법(GC) ③ 적외흡수스펙트로법(IR) ④ 질량분석법(MS)의 네 가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뇨검사에 대하여 시용자가 배출한 뇨를 증거로 제출하는데 거부할 경우에 강제채뇨를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된다. 이 경우 수사관이 신체검사영장과 감정처분 허가장의 발부를 받아 히로뽕 사용죄를 범한 의심있는 자에 대하여 강제채뇨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실무자와 학자 사이에서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뇨를 임의제출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여 신체에서 뇨를 채취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침입행위임과 동시에 굴욕감 등의 정신적 타격을 주는 행위이지만 보통 사용되는 고무제 도뇨관을 뇨도에 삽입하여 뇨를 채취하는 방법은 피채취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불쾌감 및 저항감을 준다고 하여도 의사 등 이에 숙달한 기술자에 의하여 적절하게 행하는 한 신체상 큰 위험을 가져올 위험성은 비교적 없고 설사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할 뿐이라고 생각되며 강제채뇨가 피의자에게 주는 굴욕감 등의 정신적 타격은 검증의 방법으로서의 신체검사에 있어서도 동정도의 경우가 있으므로 강제채뇨가 조사상 강제처분으로서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피의사건의 중대성 혐의의 존재, 해당 증거의 중요성과 그 체취의 필요성, 적당한 대체수단의 부존재의 사정에 비추어 범죄수사상 다른 도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수단으로서 허용되고 다만 그 실시에 대하여는 피의

---

39) 우리나라는 마약물질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분석실에서 분석하고 있고 경찰청은 1992년부터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도 분석할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표준품인 일부 마약류의 미보유로 인하여 헤로인을 비롯한 일부 마약류에 대한 감정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자의 신체적 안전과 그 인격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되어 영장에 의한 강제 채뇨를 적법화하는 한편 어떤 영장에 의할 것인가의 분배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상의 절차에 관하여 생각한다면 체내에존재하는 뇨를 범죄의 증거물로서 강제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압수·수색의 성질을 띤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함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함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0] 위의 판결에 따라 일본에서는 실무상 강제채뇨의 실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함으로써 종래 신체검사영장과 감정처분 허가장의 병용방식에서 압수·수색 영장 한 개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는 방법, 동법 제139조에 따라 신체검사 영장에 의한 방법, 동법 제173조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는 신체외부에서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만 되므로 신체내에 있는 뇨의 채뇨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방법도 직접강제의 준용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채뇨를 함이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압수할 물건란에는 피의자의 뇨, 장소란에는 피의자의 신체라고 기재하면 될 것이다. 다만 피의자가 배뇨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생리적으로 한도가 있고 어떤 시기에는 자연배뇨를 볼 수 있으며 구속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병구속에 따른 당연의 조치로서 자연배뇨 때 그 장소 혹은 그 용기를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영장의 요부를 논하지 않더라도 신병구속에 따른 하나의 조치로서 채뇨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므로 배뇨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뇨를 제출하도록 설득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채뇨를 과단성있게 실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

40) 日本 最高裁, 昭和 29年(1974年) 12月 3日

5. 효과적인 함정수사

함정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사관이 일반 사인을 가장하거나 혹은 정보원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이 범죄를 실행하는 순간 검거하는 데 쓰는 수사 방법이다. 예컨대 수사관이 정보원인 X를 미끼로 하여 히로뽕의 매입인 Y로부터 히로뽕을 매수하도록 의뢰하여 Y가 X에게 이를 매도할 때 체포하는 것이 후자의 예이고 수사관이 스스로 중독자임을 가장하여 Y에에 접촉하여 히로뽕을 매도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내어 놓을 때 체포하는 것이 전자의 예이다. 함정수사에 관한 문제로는 ① 함정수사에 의해 검거된 자를 처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 ② 미끼가 된 자 또는 미끼로 사용한 수사관의 책임문제가 있다. 먼저 함정수사에 의하여 범죄를 행하고 검거된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 고등법원은 피고인 손 모씨의 함정수사에 의한 마약법 위반사건은 무죄라는 항소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여 보니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함정 수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함정 수사라고 하여 바로 그에 의한 범죄가 정당한 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의 의사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시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미끼로 된 자가 새로운 범의를 유발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유무를 논하고 있다.[41] 이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타인의 유혹에 의하여 새로운 범의를 가지거나 혹은 범의를 강화한 자가 범죄를 실행하였을 때 유혹자가 경우에 따라서 교사범 혹은 종범으로서 책임을 진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타인을 유혹한자가 일반 사인이 아니고 수사관이라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 그 범죄 실행자의 구성요건 해당성 혹은 위법성을 조각한다거나 공소 제기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42]고 판시하여 그 이래 현재까지 그 태도를 유지 함으로써 유혹자가 범인에 대하여 새로운 범의를 유발시켰는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

41) 서울高判, 85 노 890 마약위반 등 1985.

42) 日最高判, 昭和 29年(1974年) 11月 5日

범행을 실행한 자를 문책하고 있다. 한편 미국 대심원도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비마약성으로 믿어지는 밀수 약품을 다른 수사관에게 판 사안에 대하여 '경찰 정보원이 상고인에게 공급한 것은 공급 자체가 위법하고 그 판매가 보건 범죄 행위를 이룬 약품이므로 정부가 상고인의 밀수품 판매에 개입한 역할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만 피고인은 범행 결의가 되어 있었고 수사관들은 협력해 준 것뿐이므로 경찰이 직무범위를 넘어서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적절한 주 혹은 연방법에 따라 수사관들도 처벌할 것이나 상고인 역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함으로써 역시 유책을 인정하고 있다.[43] 다만 함정수사의 방법을 취하여 검거된 범인이 항상 처벌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어떠한 한도에서 함정수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각 구체적 사안에 의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나 히로뽕 사범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을 정도의 수단을 써야 할 것이다.

다음 미끼가 된 정보원의 책임 여하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약을 밀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X로부터 입수한 마약 취제관이 X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의 견본을 구입시켜 헤로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날 마약 소지 사실에 대해 체포한 경우에 있어 미끼인 X는 수사관의 수족이 되어 범죄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고 그 미끼는 자기 행위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과 과실이 없어 범의를 조각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고 있다.[44]

마지막으로 수사관 스스로 미끼가 되는 경우 또는 사인을 미끼로 이용하는 경우의 수사관의 책임문제이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행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념적으로는 해당 범죄가 구성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다만 경찰관 X가 중독자로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마약을 살 수 있도록 부탁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Y에게 가서 Y로부터 마약을 매

---

43) Hampton v. United States, 425 U. S 484, 1986.

44) 仙台高裁, 昭和 27年(1972年) 9月 20日의 판시임.

수하여 자택 앞까지 가져오자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이 X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 대하여 위 경찰관이 취한 사술은 피고인이 본건 마약을 소지함에 하나의 기회가 된 것이고 이것에 의하여 X의 범의 및 실행 행위 그 자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좌우한 것은 아니며 X의 소위가 오로지 경찰관의 사위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추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경찰관이 그 범인을 체포함에 있어서 전기 정도의 수단을 쓴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경찰관에게 책임이 없음을 선언하였다. 결론적으로 ① 함정수사의 대상이 된 상대방의 히로뽕 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② 수사관 또는 미끼가 된 사안이 자기가 수사관인 점 또는 수사관에게 협력하는 것을 비밀로 하여 활동하고 ③ 강제수단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라 범죄를 실행시키고 ④ 미끼는 특정사건에 한하여 사용하되 완전하게 장악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족으로서 사용한다는 조건을 엄수하는 한 수사관의 책임은 면책된다고 보여진다.

第 2 節 搜査 실제상의 改善方向

1. 히로뽕의 퇴치에 대한 국민정신강화

日本의 경우 히로뽕 사범 척결을 최고의 정책 및 수사목표로 삼고, 1962년부터 경찰청에서 마약범죄 取締세미나를 開催하여 각국의 수사관을 참석시켜 정보를 교환하여 수사상의 어려운 문제점에 관하여 토론하였고 극동 마약 집행기관장 회의에 수사 실무자를 파견하여 麻藥의 불법거래와 싸우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었으며 韓國을 히로뽕 최대의 수출국으로 지목하여 1982년 한국에 한일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회의를 거쳐 한일간의 공조수사 방안 등을 토의하였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의 약물남용 통제 제지 수사경험자를 UNAFEI (United Nations Asia and Far East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ement of offenders)와의 提携下에 자국비용으로 초청하여 약물남용 문제를 연구 토론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바 있으나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하에서의 종합적인 기구도 없을 뿐더러 중요성과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심하다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는 즉시 內閣에 내린 강력한 지시 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보사부에서 일관하던 사범단속권을 법무부에서 이관, 수사체제

일원화 작업을 시발로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경찰에도 마약전담반을 편성, 경찰 교육기관에도 교육과정을 設置하고 유엔 마약기구에도 정식 가입하는 등 동종사범을 척결하는 유공자에 대해서도 범무부에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 지급하면서 검찰경찰 에서 문제의식을 홍보, 강화,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45]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회인사 중에서는 日本에 히로뽕을 수출하여 무역역조를 개선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변호사 까지도 위와 같은 내용의 辯論을 서슴치 않음으로써 순박한 국민들을 誤導하는 예가 있었다. 그러나 선진조국의 건설이라는 최고 명제를 외치면서 마약 수출에 대한 감시를 잠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 오명은 어떻게 씻을 것인가 더욱이 히로뽕 사범은 조직성·광역성·국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단·기동성있는 광역수사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전국민들에게 히로뽕 퇴치 정신을 강화 시켜야 한다.

2. 搜査예산의 確保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히로뽕사범의 수사경험으로 보면 遠隔거래(예컨데 제조는 서울에서, 去來는 부산에서)의 경향이 두드러져 조직을 일시에 粉碎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내에 수사관을 이동시킬 차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그에 많은 費用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물거래는 결코 운좋은 수사관에 의하여 발각되지 않으므로 범인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실마리인 약물을 거래에 제공케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작수사로 결국 함정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으나 판례상 허용되고 있다고 본다. 고교생의 함정수사 問題로 부산시경 단속경찰이 물의를 빚어 구속 되었던 사례로 보아 함정수사는 권장할 만한 것은 못되나 세심한주의가 필요하다.[46]물론 투약신고 등의 단서도 있으나 이것을 시초로 한 수사는 결국 미미한 하부의 사

---

45) 검찰은 UN마약기구에의 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증진에도 노력하고 마약회의를 위한 국민계몽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의 마약류회의 10개년 계획(1991~2000년)에 발맞추어 마약없는 한국을 위한 종합대책을 펴고 있다.

46) 부산지방 검찰청, 1990. 9. 형제 1239호

용투약 범죄 검거로 밖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體驗한 사실이고 많은 물량의 압수로 부터 개시된 수사는 역시 거물급 범인을 검거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또한 거물들은 少分하여 거래치 않고 일시에 다량의 약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들을 誘惑하는데는 1억원이상의 미끼의 공작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거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통사범은 검거하지 못하고 사용 사범의 단속에 그칠 확률이 매우 높아 때때로 수사관을 곤경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경찰의 일반범죄 수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히로뽕 사범 수사에는 아낌없는 많은 수사자금의 支援이 필요하다.

3. 情報員의 올바른 活用

히로뽕 사범은 피해자 없는 범죄이므로 일반 형사범과 같이 피해자로 부터 단서를 얻을 수 없고 유발범죄인 방화·강도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마약수사 전문요원이 尿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약물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추급수사를단행할 필요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설비가 적어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보다 정보원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수사의 단서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정보원의 이용은 특정 마약사범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범죄정보는 범죄꾼으로 부터 유출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것이 히로뽕 사범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정보원이라 할지라도 정보 제공 중에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추측은 할 수 없으면서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을 이용하던 중 사소한 범법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눈감아 주지않는 한 수사는 지팡이 없는 장님의 신세밖에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눈감아 줄 경우 정보원의 미끼에 걸려든 범인으로부터 수사관계자 특히 검사 또는 경찰이 그 정보원의 비호세력이라는 오해를 받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점이 히로뽕 사범 수사의 최대의 난점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필요 적절하게 일정한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필요악이다'라는 전제 아래 올바르게 정보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4. 연안 봉쇄 대책

히로뽕은 주로 염산에페드린을 가장 중요한 원료로 하여 치오닐 염화바리움(파라디움) 에델 등의 화공약품을 配合하여 만들어지는 바 치오닐, 염화바리움, 에텔 등은 시중 화공약품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염산에페드린의 밀반입을 봉쇄한다면 제조는 불가능하게 되어 沿岸에서의 차단 수단이 강구될 필연성이 있다.

그리고 일본으로 밀수되는 히로뽕은 거의 선박을 이용한 휴대형식 또는 공해상에서 거래하는 소위 해상박치기 수법으로 거래되는 바 화물의 수출입 해상 범죄 수사에 조사하고 있는 세관원, 해양경찰대원 등이 히로뽕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여 원료의 유입 및 완제품의 유출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세관, 해군 경비정 및 해양경찰대에 마약류 식별 犬을 승선시켜 거동 수상한 선박에 대해 철저한 선박 검문 검색을 실시하는등 해상봉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경찰 수사 체제의 현대화

1) 조직 개선

(1) 마약 범죄의 퇴치는 결국 경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경찰수사가 중추적 역할이 되어야 한다. 전국 최대의 수사망과 인력을 가진 경찰청에 전국을 상대로 마약 수사를 일괄 지휘 및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마약국 내지 마약과를 설치, 국제적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무대화하고 있는 제조 유통사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예화된 경찰수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경찰청 마약국 또는 마약과의 일사분란한 지휘 아래 사용 사범 척결을 분담받아 수사에 전념하는 동시에 마약정보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육 개선

수사권 발동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선임순경 교육은 채용에

서 배출에 이르기까지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현대적인 교육체제로 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마약수사 전담요원 역시 계속적인 연구 자세와 함께 특수교육을 이수해야 되며 히로뽕등 마약사범의 국제성에 대비 미국·일본 등에 수시로 파견, 해외마약수사기관을 시찰 국제적인 수사방법도 개발시켜야 한다.

3) 수사기능 개선 및 업무추진

(1) 組織的이고 傳門的 搜査체제의 確立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전문적인 수사체제를 확립하여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문수사관을 육성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여야 함은 물론 수사간부 또는 수사실무요원들은 경험과 이론적 바탕이 풍부한 전문가를 확보, 또는 양성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수사체제로 확립 시켜야 한다.

(2) 科學的 搜査장비 및 支援체제의 確立

최근의 통신 장비인 삐삐·무선전화기 지급 및 기동장비 등 수사장비를 확보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모든 정보관리 및 전달체제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수사의 경제성 및 기동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사범을 전산화하여 언제든지 전과자. 우범자 등 관련자를 한눈으로 전산망 을 통해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수사관들이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체제를 확립시켜야 한다.[47]

(3) 國際的 협조체제의 確立

마약류 사범의 국제화의 대처하기 위하여는 국제정보 수집체제를 정비하고 마약류 사범의 인도를 포함한 문제들에 대하여 외국과의 협력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ICPO, 국제연합 관계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출입국 감시체제 및 밀수방지를 위한 체제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47) 동아일보 10면, "대검찰청은 마약류 사범 전산망 작업 완료". 1991. 2. 15

(4) 捜査要員의 養成

① 순경급 수사관 양성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해야하는 수사경찰은 순경에서부터 실무경험과 이론적 바탕위에서 양성된 수사관이 영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바탕위에서 배출된 감독자가 실전경험에 의한 완벽한 수사지휘 체제로 수사주전 부대장 또는 야전사령관으로써 수사활동이 진두지휘될 것으로 본다. 즉 범인을 직접 검거해보지 않고 실제수사를 해본 경험없는자는 수사감독 또는 지휘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에대한 수사요원양성반안을 제시한다면 신임순경 교육이 끝난 후 교육성적이 뛰어나고 용모, 인성 등 성장과정이 양호하고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자를 엄선, 일단 현지에 내보냈다가 1992년 10월 개원되는 형사학교에 재입교시켜 후반기 수사교육을 미국의 FBI교육과정에 준하는 2년간에 걸쳐 강도높게 실시 순경에서 경정까지 특별한 잘못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동 승진제도를 도입하면 충분한 실무경험을 활용하고 실무경험에 의한 감독자로도 활용 할수 있고 승진의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일웅명문일류대학 출신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사들이 조직내로 유인되기 때문에 전기공학, 회계, 법의학 환경 생물학등 기초과학 응용수사가 가능하게 되고 수사권자질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로 장기계획을 수립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② 수사지휘관인 경찰서장

위 ①의 순경급 수사관 양성과정을 거친자가 경찰서장이 되어야 수사권을 확립할 수 있다. 또, 경찰서장의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을 두고 이들은 고시출신자로 우선 임용케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제도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 법무관제도를 원용한 경찰법무관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현행 사법고시 출신자중 판검사에 임용되지 않는 변호사를 군복무를 면해주는 조건으로 복무기간동안만 활용하면 될 것이다.

경찰서장은 이들의 자문을 받아 변사체처리 지휘 및 경미한 사건에 있어 불구속을 결정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후검사의 동의를 구하는 수사능률화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제도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다변화하는 국제적 추세와 고도의 정보와 산업화사회에 경찰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고 내실있는 국민체감 치안을 담당케하는데도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현장수사의 변사체처리지휘권 및 경미사건 불구속지휘권은 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줄여줄 수 있고,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업무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第 3 節 搜查方法上의 改善方向

히로뽕사범 수사에 종사하는 수사관에게 있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사명감이라고 생각된다. 건강하지 못한 국민적 바탕 위에 선진조국은 결코 건설될 수 없으므로 이 수사에 방심하면 결국 국민이 중독되고 따라서 국가도 나약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필코 동종사범을 절멸시키겠다는 불타오르는 정열이 없이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령의 해석, 수사 · 이론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실제수사에 임해서도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서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여러 범인이 관여하고 있을 때 책임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압수 수색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조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등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사 경험을 토대로 각 사범의 태양별로 유의점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히로뽕 제조사범 수사

1) 단서의 파악 방법

히로뽕 제조 사범의 수사에 있어서 우선 수사관에게 전문적 화학지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히로뽕 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득하여 어떠한 약품을 어떻게 배합함으로써 히로뽕을 제조하는 것인가를 모르고서는 수사는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제조범이 수사선에 놓이게 되는 경우로 밀조자가 밀조 과정에서 사고를 내는 바람에 발각되는 예가 있다. 예컨데 공해방지 연구 센타라는 등의 간판을 내걸고 공해 방지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위장하는 경우가 있는 바 그곳에서 화재, 폭발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에 임한 수사관이 범인 등의 허위 설명을 경신한 체 히로뽕 제조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귀중한 수사의 단서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 사범 수사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화재, 폭발사고시 혹시 히로뽕을 제조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염산 에페드린 에텔치오닐 파라리움 등 원료 및 교반기, 여과병, 수소발생기 등 제조기구 발견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에 의하여 어떤 자가 히로뽕을 제조하고 있다는 현장을 찾았을 경우 곧바로 현장을 수색하거나 범인을 검거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물들이 출입하는가, 기술자는 누구인가, 자금제공자는 누구인가, 화공약품은 어디서 구입하고 있는가 등 광범위한 기초수사 등을 철저히 하고 난 뒤 가장 많은 관계자가 집합하여 있을 때 체포, 압수·수색에 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기타 단서로서 투서, 밀조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유통사범을 검거하여 위로 처 올라가 제조범을 찾아내는 추급수사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유통사범에서 논하기로 한다.

2) 효과적인 압수·수색

히로뽕 제조가 틀림없이 진행되었다는 확신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대물적 강제수사인 압수 수색이 뒤따르게 되는 바 이때에는 범인이 취한 제조공정에 의

하여 히로뽕 제조가 객관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이 수사의 중점이므로 범인이 어떠한 공정을 거쳐 제조하였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그 취한 공정을 재현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 제조 현장에는 원료, 각종 화공약품, 반제품, 각종 제조기구·기계 등이 산재하여 있어 그 위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시 도면 등에 의하여 증거물의 설치 장소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압수 목록도 될 수 있는 한 제조공정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제조공장에는 인화성이 강한 약품, 극물 등이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를 요하고 범인들이 황산, 염산액 등을 수사관에게 퍼부으며 반항할 염려도 있으므로 신변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후에 기술자는 누구이고 방조범은 누구인가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물통, 여과병 등에서 지문 채취를 하여 두면 유익할 것이다. 히로뽕 제조의 기수·미수를 판별하기 위하여 폐액 또는 방안에 흐른 미량의 약품까지도 압수하여 감정의뢰함으로써 성분이 검출되면 기수의 죄책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객관적인 증거물이 많으면 많을수로 피의자 조사시 그를 추급할 자료가 풍부해지는 것이다.

3) 죄책의 합리적인 분배

직접 제조행위를 실행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종범으로 처벌할 것인가가 실무상 문제되는 바 히로뽕를 제조하려는 계획의 어느 단계에서 관여했는가, 기술자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접촉 상황은 어떠한가 현실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가, 이익분배 내용은 무엇인가 등을 종합하여 사범전체에 대한 관여도에 따라 상응한 죄책을 분배해야 되므로 설사 범인이 자기는 단지 방조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밝혀지면 공동정범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제조사범을 조사할 때에는 범인의 경력, 특히 화학지식의 연수상황 및 화학 분야에 종사한 직력, 동기, 자금제공자, 밀매책 등 공범자간의 관계, 제조방법 체득경위, 참고문헌, 원료 약품의 구득경위, 현실로 취한 방법·공정, 화학방정식, 제조횟수, 제조량, 원료와 완제품의 비율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수사관으로서 화학지식이 불충분할 때에는 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참여시킨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다.

4) 완제품 불발견시의 조치

당해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이 압수되고 감정결과 틀림없는 히로뽕임이 판명되면 문제 없으나 제조현장에서 제품을 압수하지 못한 경우 기수의 죄책으로 입건하기 위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기수로 인정하더라도 제조량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결국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도리밖에 없겠으나 제조자가 히로뽕을 작출하였다고 자백한다면 그 제조방법 및 공정에 의해 히로뽕을 제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감정에 의하여 명확히 하고 제조자가 소비한 원료량을 확정한 다음 사용한 제조공정에 의한 수율을 계산하여 제조된 히로뽕 양을 산출 입증하면 될 것이다.

5) 제조 총책의 입건

히로뽕 제조범은 동종사범중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통상이어서 당해 조직의 최상선에서 제조는 물론 유통, 수출입 등을 배후에서 조종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즉 제조총책으로 군림하는 자는 직접 제조, 원료 구입, 판매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자금운용으로 수사관을 매수하거나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현장을 확보하고 실제 제조에 참여한 기술자를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총책을 공동정범으로 입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경우에는 총책으로붙어 자금이 유출된 경위를 은행 구좌·현금출납부·메모지 등을 압수하는 등 세심하게 수사하고 전화번호부, 수첩 등을 근거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가 조사한 다음 전화국에 조회하여 공범 상호간의 통화횟수 등을 확정하고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상호 접촉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 자금 제공자가 제조현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현장에 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간부의 배하에 있는 하수인이 사전모의에는 관여하지 않고 간부의 명을 받아 제조를 담당

한 기술자를 감시 혹은 독려하고 약품 및 기구의 구입을 도와 제품을 소분하고 운반한 사안에 대하여 그 배하에 있는 자의 관여기간이 약 반년이라는 장기간에 달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6) 영리목적의 확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제40조 제2항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한 자를 일반제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어 영리의 목적 유무도 조서상에 실체화할 필요가 있다.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드시 일정한 직업 없이 제조를 직업으로 할 필요는 없고 특히 반복·지속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단 1회의 제조에 착수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히로뽕 제조죄가 성립될 경우 예컨대 화학적 지식을 가진 자가 취미로 시험삼아 제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해당제품을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할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대체의 제조범인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48]

2. 히로뽕 유통사범 수사

1) 수출입 행위 수사

(1) 단서의 파악

히로뽕의 수출입은 주로 선박, 비행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선박, 비행기의 입출항·이착륙을 감시, 단속하는 세관·해양경찰대의 공무원에 의하여 단서가 파악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매일 입출항·이착륙하는 다수의 각종 여객, 승무원 등을 상대로 히로뽕의 밀수출입을 여부를 이착륙하는 단계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지난의 작업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범을 즉각 적발하는 데 있어 당초부터 특정 선박의 승무원 내지 여객이 히로뽕를 밀수출입한다는 정보가 확보되어 그 자에 대하여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무원 내지 여객을 모두 밀수출입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적당하기 않고 또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양경찰대원, 세관원이 그 고유의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자가 히로뽕을 소지하고 있음을

---

48) 東京最決, 昭和 35年 (1980年) 12月 12日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경우 예컨대 어느 특정한 자가 현재 외국에 나가 있으나 멀지않아 히로뽕을 휴대하고 귀국할 것이라는 확실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자의 귀국을 기다려 공항이나 항구에서 동인의 신체 및 휴대품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범칙사건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미 범칙사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동인이 히로뽕를 소지하고 영공, 영해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사실상 곤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는 관세를 내지 않고 화물을 반입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여구검사시에 히로뽕을 소지하였을 때 이를 검거하여 그 미수범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강제조사와 동시되므로 인권침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히로뽕 수출의 양상도 종전의 휴대형식 외에 정식으로 히로뽕 이외의 화물에 관하여 L/C를 개설한뒤 그 화물속에 아니면 그 용기의 은밀한 곳에 각성재를 숨겨나가는 수법이 있다. 예컨대 미꾸라지를 수출하면서 그 용기의 중간부분을 뗌질하고 그 사이에 히로뽕을 은닉한다든가 자개농을 수출하면서 밑바닥에 히로뽕을 깔아 넣고 그 밑에 판지를 대어 은닉한다든가 법주병의 술을 쏟아내고 그 속에 히로뽕를 넣은 다음 교묘하게 뚜껑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히로뽕을 수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의 자개농, 용기, 술병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히로뽕 수출사범을 수사할 때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대개의 동종사범의 배후에는 외국의 Buyer가 있고 그 자와 미리 상담을 마친 주범이 있기 마련이므로 충분한 내사를 하여 목표가 되는 자의 행동거점, 그 곳에 출입하고 있는 자, 자산 상태, 예금의 종류, 외국여행경력, 국제전화 이용 상황등을 될 수 있는 한 파악함으로써 그 조직의 관계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검거해야 되고 재빨리 소지범을 검거하여 다른 공범들이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실패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2) 범인의 체포시기

히로뽕 수출사범 수사를 성공리에 끝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피의자를 확실하게 체포하여 그 신병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수출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할 시기가 매우 중요한 바 예컨대 부산항을 출항하려는 냉동선의 승무원이 히로뽕을 밀수출하려고 한다는 정보에 의해 자신만만하게 당해 선박에 들이닥쳐 히로뽕는 확고하게 압수할 수 있었으나 각 승무원에 대하여 그 약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누구인가 질문을 하여도 모두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에는 결국 범인은 검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사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개의 사건의 특질과 피의자의 동정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범인을 확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범인을 체포하여야 하고 이때 특히 유의할 것은 체포시에 범인이 어떠한 언동을 취하였는가를 냉정하게 관찰하여 체포 경위서에 명확히 남겨두어야 한다. 범인은 자기는 타인의 의뢰로 당해 물건을 운반하였을 뿐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히로뽕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주장을 깨기 위하여 체포시의 언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3) 공범자의 조사

히로뽕 수출사범의 주위에는 공범자가 존재하는 것이 통례인 바 수출의 실행을 실제 담당한 자는 공범자 중에서 비교적 낮은 지위에 있어 주범을 검거하더라도 자기는 히로뽕을 외국에 수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든가 가공 인물이 시켜 단지 심부름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함으로써 법정형이 높은 수출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오직 종범의 자격만을 강조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배후의 조종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키 위하여 수출 실행자로부터 히로뽕을 교부받은 경위, 실행자가 수출을 완료하고 외국 내에서 물건을 주기로 한 인물 접촉방법, 운반비용의 약정 내용 등을 상세히 조사한 다음 압수된 메모지에 적인 외국의 Buyer와 주범과의 관계 등을 추궁하면서 설득함으로써 자백을 받아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공범자의 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공범 종속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수출 실행정범이 실행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바 예컨대 정범이 실행에 착수

하기 이전 단계에서 체포된 경우 이론적으로는 수출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우리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제40조 제3호는 수출죄 외에 수출목적소지도 나열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수출의 공범문제는 크게 논의할 실익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예컨대 범인이 히로뽕을 수출함으로써 외국에서 체포된 경우 국내에 있는 공범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즉 공범자가 히로뽕을 수출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실행정범과 함께 외국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자료를 얻는 것도 어렵고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법정에 제출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케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 존재하는 수사관계자료를 얻는 방법으로 전통적 방법으로서의 외교루트에 의한 방법, 수사관을 직접 당해 외국에 파견하여 직접 얻는 방법, 최근 활발해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루트에 의한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에 의하든 외국주권의 존중과 상이한 형사소송 절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달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내에 있는 수출공범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얻은 자료는 증거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이므로 그 자료를 근거로 히로뽕의 유통경위를 밝히고 추급수사에 의한 조직의 상선 색출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4) 양도·양수 행위 수사

① 추급수사의 실행

소위 추급수사에 의하여 양도·양수사범을 입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판명되면 말단의 소지·사용사범에 관계되어 있는 자로 하여금 당해 히로뽕의 구입선을 진술토록 하여야 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의 경향으로 보건대 일단 검가된 자는 자기의 죄책은 인정하더라도 조직을 배경으로 하는 유통경로에 대하여는 쉽게 입을 열지 않는 상황에 있어 추급수사의 성공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 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에 임하는 수사관의 끈기 있는 인내심으로 소지·사용사범을 끈질기게 설득, 추급함으로써 진실을 진술케 하

는 수밖에 없겠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하야 한다. 첫째, 단순한 사용사범 내지 미량의 소지사범이라도 관계장소에 대한 철저한 수색으로 유통에 연결되는 증거물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여야 한다. 둘째, 피의자 및 가족, 우인 등으로부터 피의자를 에워싸고 있는 인맥을 규명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약물사범의 전과자인 경우에는 그 수사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과거의 인맥을 파악하면 현재의 인맥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말단의 사용자 대부분은 그 구입선을 진술토록 하면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히로뽕의 거래는 원래 극비리에 이루어지고 초면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으므로 주변인물을 파악하면 피의자에게 약물을 양도한 자의 단서를 얻을 수도 있다. 셋째, 각 수사기관이 수집하여 놓은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같이 하여 히로뽕 양도선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얻었을 때에는 말단사범으로부터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그 자의 특징, 거래 일시, 장소, 거래대상이 된 히로뽕의 양, 포장, 품질, 히로뽕임은 어떻게 확인하였는가, 동업자의 유무, 구입자금의 준비상황 등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조서화 하여야 한다. 즉 진술의 신용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전화도청

히로뽕의 거래가 행해지고 있다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이 밀매인이라고 지목되는 자와 그 고객과의 전화통화의 내용을 도청에 의하여 탐지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것이 수사행위의 일환으로서 허용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물의 압수에 관하여 특칙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107조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는 수사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수사기관이 히로뽕의 밀매인을 특정한 용의로 체포하여 그 용의를 굳히고 그 피의자가 밀매인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법원의 검증영장을 받아 피의자로부터 발신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신한 통화의 내용에 대하여 피의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만 도청은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과거에

범한 범죄에 관한 증거 수집이 아니고 장래에 범할 범죄의 정보 내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비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49]

③ 피의자와 사건의 결부

히로뽕 양도·양수사범의 추급수사를 실행함으로써 수사가 진전되어 유통구조의 상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피의자와 물건의 결부가 얇아진다. 즉 히로뽕사범에 있어서는 거래대상이 히로뽕인 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당해 물건이 압수되어 감정결과 그것이 히로뽕임에 틀림없음이 명백히 될 것이 요망되는 바 추급수사에 의하여 상선을 검거하였더라도 소지·사용사범이 소지하거나 사용한 히로뽕이 과연 위 상선이 거래화한 히로뽕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따라서 수사관으로서는 물체의 동일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단의 자로부터 압수된 히로뽕 포장의 방법, 분말의 색깔, 입자의 대소 등으로 보아 상선의 거래대상물과 동일한 것이고 또는 거래대상물이 틀림없는 히로뽕였다는 점을 거래 관여자들이 시험적으로 주사를 놓았다든가 하는 품질확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된 시기로 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상선이 검거된 경우 또는 유통사범들이 다회의 거래를 자백하였으나 그 구입선 내지 구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히로뽕을 압수하지 못한 소위 '물증없는 사건의 입증'이 문제된다. 이점에 관하여는 이미 논하였으므로 생략한다.

④ 복수 관여자의 죄책의 확정

대규모의 히로뽕 밀매사건에 있어서는 자금책, 구입책, 소분책, 중개책, 전화담당책 등 복수인이 관여하고 있어 구체적 사건처리에 있어 실무상 누구를 정범으로, 누구를 방조범으로 입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중개자가 개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중개인의 중개행위가 양도인의 방조인가 아니면 양수인의 방조인가 또는 독립하여 히로뽕을 양수하여 다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및 양수의 단독정범인가의 사실인정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범과 같이 실행한 자를 말하지만 실무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인의 의사내용 및 행위태양은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확정하기 어렵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피고인이 원래 갑으로부터 히로뽕을 매수하기로 약속했었으나 자금사정이 예

---

49) 김진환, "盜聽과 祕密綠陰 및 撮影에 관한 考察"「檢察」, 1979.

의치 않아 을과의 사이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것을 약속한 뒤 을을 갑에게 알선하였으나 갑이 초면인 을과의 직접거래를 거부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히로뽕을 수취하여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매매된 사안에 있어서 피고인은 갑으로부터 직접 히로뽕을 수취하였고 그 대금 39만원과 을이 지참한 부족금 3만원을 자기가 보충하여 시종 매수인 을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있고 매도인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을을 대신하여 의연 매수인의 입장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을과 공동하여 히로뽕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수관여자의 매책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의사, 범행시의 주도성, 대금의 지불수취상황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본인의 행동 및 그와 같이 취한 이유는 물론 다른 관계인의 언동에 대하여도 가능한한 상세한 진술을 구하여 조서화하여야 할 것이다.

⑤ 강제수사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

양도사범에 대해서 범죄의 혐의가 농후할 때에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당연히 당해 밀매자에 대한 체포 및 관계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야 하는 바 특히 주의할 것은 밀매 범인이 단독으로 범행하고 있고 밀매 횟수도 적은 간단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상 공범자의 존재를 예상하는 동시에 그 밀매자에게 히로뽕을 공급하고 있는 배후의 조직 및 그 밀매인이 제조범과 결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명심하고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제수사에 착수함에 있어서는 당해 피의자의 일거일동 은 물론 그 주변에 대해서 철저한 내사를 한 뒤에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성급하게 피의자를 체포하려다가 공범자를 놓치거나 애써 히로뽕을 압수하고도 소지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사태에 봉착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관계장소를 수색함에 있어서는 범인이 밀매하고 남은 히로뽕 고객내지 이와 거래한 내용을 적은 메모, 전화번호, 주소록, 금전출납장부는 물론 저울, 비닐, 포장지, 가위, 소형아이론, 증량제로 사용하는 약품, 히로뽕 품질검사에 사용하는 시약, 주사기 등이 당해 밀매인이 어느 정

도의 히로뽕을 구득하여 얼마만큼 거래하였나를 추정할 중요한 증거물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의 공동정범임과 동시에 판매책일 가능성을 현실화할 귀중한 자료이므로 이것들을 남김없이 압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압수한 뒤 지문 채취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양도 혹은 양수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함에 있어서 거래현장에는 통상 중개인 등 관련범인 등이 있기 마련이므로 그 일당을 모조리 검거할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하고 다량의 히로뽕을 압수하였다 하여 이 기밀이 방송되는 등 공개됨으로써 그 상선 및 상선상의 범인들이 재빨리 도망가는 것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명백히 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범죄는 히로뽕의 일련의 극히 일부의 사실에 불과함을 염두에 두고 양도선, 밀매 조직의 실체, 공범자의 해명 등에 중점을 두고 피의자의 여죄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력, 가족관계 직업, 자산상태, 교우관계, 히로뽕거래에 관여한 경위, 전과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 구입자금의 준비상황, 구입한 양, 증량제의 사용여부, 보관방법,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회수상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조서화함과 동시에 그 각각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수집에 힘서야 한다. 또 이들 사범들은 법정에서 고문 등을 당하였다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체포 경위 등을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고 조사장소 역시 되도록이면 여관, 호텔 등 은밀한 곳을 피하고 청사 내에서 조사 함으로써 자백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3. 히로뽕 소지사범 수사

1) 수사의 단서 확보 방법

히로뽕 소지사범의 수사는 범인의 히로뽕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므로 우선 '히로뽕의 존재'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의 단서로서 히로뽕의 발견이 극히 중요하고 그 수단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심검문

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에 부수하여 행하는 소지품 검사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행정 경찰상의 작용으로서의 소지품 검사는 불심검문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그 적법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50] 다만 소지품검사는 이를 행하는 경찰관의 개성, 상대방의 태도, 더욱이 주변의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행하여지는가 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경찰관이 상대방의 소지품의 내용의 제시를 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여 소지품을 개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내용물의 전시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소지하는 가방 등의 외부를 만져보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등 구체적 상황하에서 소지품검사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각 항에 의한 불심검문은 어디까지나 임의로 행해져야 하므로 그 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그 허용한계를 넘는 소지품 검사는 예컨대 히로뽕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히로뽕 소지죄를 입증할 자료로 인용될 것인가 등이 문제되나 구체적 사안에 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경찰관이 소지품의 제시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이 부동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경찰관이 외부에서 만져보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정도의 유형력행사라면 당해 소지품 검사는 불심검문에 부수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판례는 '불심검문에 부수하여 행하는 소지품 검사는 소지인의 승낙을 얻고 그 한도 내에서 행함이 원칙이나 압수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행위는 강제로 실시하지 않는 한 소지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소지품 검사의 필요성, 긴급성, 그것에 의하여 침해될 개인의 법익과 보호되어야 할 공공의 이익의 권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하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될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히로뽕의 사용 내지 소지의 혐의가 농후하게 인정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 중 그자의 동의없이 상의 좌측 안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소지품을 꺼내 검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높은 행위이고 그 태양에 있어서 압수수색과 유사하므로 불심검문에 따른 소지품

---

50) 부산지방검찰청, 「마약류사범실태」 1986. p.46

검사의 허용한계를 이탈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원으로부터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 안에 마약을 갖고 권총을 차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Jeon Kyoung 경사가 범인에게 차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범인이 차창만을내리자 차안으로 손을 뻗쳐 허리에 찬 권총을 낚아 채고 범인을 총기불법소지로 체포한 사안에 대하여 미국 대법원은 '불심검문의 합리적 근거는 수사관의 개인적 관찰에만 근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정보원이 경우에 따라 그 가치와 신빙성이 크게 좌우되므로 Jeon Kuoung경사는 협의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차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차창만을 내렸을 때 권총을 감추고 있는 곳으로 믿어지는 부분을 검사함은 그 신변안전을 위한 제한된 침해로 합리적이므로 그 체포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의 판례를 검토하건대 히로뽕을 발견할 목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면서 소지품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끝까지 끈기 있는 설득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그 소지품을 개시토록 함이 원칙일 것이고 불가피하여 허용한도 내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을 하였다고 하여 비난을 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및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소지품 검사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어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구체적 상황 아래서는 그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힘들여 히로뽕을 발견하고도 위법한 소지품 검사라고 하여 그 히로뽕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범인이 무죄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하고 수사관 일반에 대한 불신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 타사건 수사중 소지사범 발견시 조치 방법

히로뽕 소지사범의 수사에 있어서 수사관이 히로뽕을 발견하는 계기로서 히로뽕 이외의 범죄 예컨데 상해죄, 절도죄 등을 범한 용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관계장소를 수색하던 중 우연히 히로뽕을

발견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수색이 현행범 체포에 따른 것이거나 영장에 의한 것이거나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물을 위 수색절차에 따라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사건의 수색의 과정에서 발견된 히로뽕을 압수함에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히로뽕을 발견한 시점에 그 히로뽕의 소지인이 확정되어 그 자가 수색의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 소지인을 히로뽕 소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그 히로뽕을 압수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소지인을 확정할 수 없고 확정되었어도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새로이 성명 불상자 또는 당해 확정된 피의자를 피의자로서 히로뽕 불법소지혐의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실무상 압수수색 현장의 입회인으로부터 당해 히로뽕을 임의제출받아 이를 압수하는 편법을 쓰고 있으나 그 입회인이 당해 히로뽕을 수사관에게 제출할 권한이 없는데 이로부터 제출받는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51] 문제이다. 그외의 수사의 단서로서 밀고, 기타의 정보, 관련사건 내지 기타 사건의 관계자의 공술에 의한 경우도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 뭐니뭐니해도 적절한 수색을 행하여 확실하게 히로뽕을 압수함이 필요하고 범인이 수사의 기미를 눈치채면 히로뽕을 물에 넣어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함으로써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3)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으로 신체수색 여부

히로뽕 소지사범에 대한 히로뽕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색장소에 들이닥칠 때 상황에 따라서는 당해장소에 있는 자의 신체를 수색할 필요가 생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으로 그 곳에 있던 자의 신체를 탐색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 바 긍정하는 견해로 그 장소 내에 통상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컨데

51) 東京支判, 昭和37年(1982年) 8月 8日 : 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사무실을 수색하던중 피고인의 책상에서 그 소유의 히로뽕을 발견하여 이를 종업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이를 피고인의 히로뽕소지죄에 대한 증거로 하여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본건 히로뽕 분말 1포에 대하여는 보관상황으로 보아 피고인의 사물인 외관을 보였으므로 즉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받는등 절차를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종업원을 보관자와 동시하여 임의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회사가 수색을 당하는 경우의 그 회사 수색이 허용된다는 견해 및 일반인이라도 그 자가 수색의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상황에 있을 때에는 당해장소에 준하여 수색이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고 부정적인 견해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주거 등 어떤 특정한 장소에 관한 수색장을 집행할 때는 우연히 그 곳에 있는 제3자의 고유물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그 장소에 있는 어떤 물건에 관하여도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풀이되지만 그 장소에 있는 신체에 관하여 수색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생각컨대 통상 '장소라는 관념은 그 곳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풀이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수색에 의해 해당되는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라는 판결이 있다. 생각컨데 압수의 대상인 히로뽕을 옷에 넣어 가지고 있거나 이를 가지고 도망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를 수색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경우에도 새로운 영장을 수색하는 고통은 참아야 할 것이다.

4) 히로뽕을 발견하였을 때의 조치 요령

위에 설명한 여러 가지 단서에 의하여 히로뽕이 발견된 경우에 그 소지자가 불명인 경우가 많다.

특히 밀매조직의 아지트에서 발견된 경우 관계인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그 히로뽕의 소지에 관하여 누구를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가 곤란을 겪을 염려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수색장소에 출입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관리인은 누구인가, 관리상황은 어떤가, 히로뽕의 은닉처는 어디인가, 히로뽕이 들어있는 용기 및 봉지에서 누구의 지문이 검출되었가 등을 명확히 하여 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소지인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지사범을 확정함에 있어서 수색시에 관계자의 언동이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기록화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색장소에 있는 자는 대개 그 히로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증거가 없어 구속치 못하더라도 후일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증

기타 공부 등을 열람하여 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히로뽕 인식의 입증

히로뽕 소지사범 수사에 있어서는 히로뽕을 실질지배 내에 놓은 자가 그 물건이 히로뽕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범인의 인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따라서 수사관으로서는 히로뽕임의 인식을 끝까지 부인하는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히로뽕 휴대의 방법, 은닉의 방법, 발견시의 포장상황, 본인의 언동등을 포착하여 끈기 있게 취급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최후까지 범의를 부인하면 정황증거에 의하여 그 인식을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를 압수한 수사관은 이들 정황을 기록에 명백히 나타내야 하며 이를 염두에 둔 수사보고서, 압수수색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 상황을 사진으로 현상하여 서류에 첨부하는 등의 배려가 요망된다. 또 피의자가 과거에 히로뽕을 경험하였는가의 사실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히로뽕임을 인식한 점을 입증함에 극히 중요한 사실이므로 신체의 주사흔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해 뇨검사를 함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주변인물 등으로부터 피의자의 히로뽕 사용 전력 등을 확인하여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히로뽕을 자기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도 후자의 경우에는 영리목적 소지죄로 처리할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에 있어 상당량의 히로뽕을 소지한 사안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에 있어서 소지사범과 달리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구입선을 완강히 비익하는 한 구입한 양 및 거래가격 등으로부터 그 소지를 추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52]

그러나 통계상 히로뽕의 1회 사용량은 0.03 g ~0.05 g 이므로 예컨데 32 g 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00회~60회의 양이므로 범인의 경제사정으로 보아 도저히 자기사용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수사관으로서는 수 그램의

52) 부산지방검찰청 형 제 91호 "世宇派 히로뽕 밀조 및 밀매단사건 조사시 입증"1989.

양을 소지한 범인을 수사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에 의한 소지의 의심을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

4. 히로뽕 사용투약사범 수사

히로뽕 사용사범은 히로뽕의 유통경로에 있어 최종단계에 불과하므로 또는 사용사범은 순수한 피해자 없는 범죄이므로 동종사범을 경시함으로써 수사를 게을리하는 경향도 있으나 이 사범은 계속 개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어 있고 히로뽕 사범수사의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사관으로서는 사용사범의 중요성을 백분 이해하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사범의 근원을 꿰찌르는 과단성 있는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히로뽕 사용은 종전에는 폭력배, 유흥업소 종사자, 창녀 등 극히 제한된 사용층에 지나지 않았으나 날이 갈수로고 일정한 직업을 가진 운전사, 회사원, 은행원 등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두꺼워지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히로뽕 사용사범은 히로뽕에 대한 최종 수요자이므로 또한 법정형도 하향 조정 되어 있어 제조 유통사범 등에 비하면 수사의 단서를 찾기 쉽다. 히로뽕 사용사범의 입건에 있어서는 사용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바 사용목적의 여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한다. 따라서 주사하는 경우는 물론 치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충치내에 채우고 이를 삼키는 경우 여성이 음부 질내에 바르는 경우, 성적 쾌감, 억제외에도 학술의 목적도 사용에 해당된다. 또 인체이외의 동물, 예컨대 경주마에 대하여 히로뽕을 주사하여도 본죄로 입건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서 뇨검사가 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뇨검사에 관하여는 이미 '히로뽕 사범 수사 실무상의 문제점'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상세한 논술은 생략하고 다만 부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임의제출 받거나 혹은 채취한 오줌의 특정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범인중에는 그 오줌의 감정결과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실은 자기의 오줌이 아니라고 변명하여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변명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결국 비난

받는 수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수사관으로서는 피의자로부터 오줌을 임의제출 받을 때에는 배뇨에 반드시 참여하여 당해 제출된 오줌이 피의자 자신의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배출단계에 있어서도 그 오줌에 대한 임의제출서를 받아둘 뿐 아니라 피의자의 면전에서 그 오줌을 담은 용기에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이에 서명 날인시키는 등 그 오줌이 감정에 제공해질 때까지 특정됨으로써 동일성을 해하지 않게끔 객관적으로 보장되었음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53]. 또한 피의자의 오줌에서 약물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도 자기는 감기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히로뽕성분이 검출된 것인지 히로뽕을 사용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바 타 약물을 체내에 섭취한 경우 특히 복수약물이 섭취된 경우 그것이 체내 신진대사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구조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현재에 있어서 다른 복수의 약물이 우연히 작용하여 뇨 중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변명을 할 경우 이를 막무가내로 무시하지 못하고 피의자로부터 어떤 약물을 복용하였는가, 그 약품명은 무엇인가 등을 모두 청취하여 제약회사로부터 그 성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약품이 인체에 흡수된 경우 그 오줌에서 히로뽕과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는가 어떤가도 감정하며 놓을 필요가 있다[54].

끝으로 사용사범에 있어서 뇨검사가 극히 중요하지만 뇨감정 결과가 없다고 하여 입건하지 못한다고 속단할 수 는 없다. 예컨대 피의자는 사용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일시가 상당히 오래되어 그 오줌에서 히로뽕을 검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목격자자의 진술, 피의자 팔뚝에 남아 있는 주사흔, 주사기, 히로뽕 용해에 사용한 기구 등의 기존물을 보강증거로 하여 피의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수도 있다. 또 최근에는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허위자백을 하고 공판정에서 그 자백을 엎어 자백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모순점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피의자가 설사 자백

---

53) 東京支院, 昭和43年(1988年) 11月 29日 : 피고인이 메이코린 P와 특수주사를 맞고 위장약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안에 대해 약품이 신체내에서 변화를 일으켜 뇨검사때 히로뽕과 동일한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으나 주목해야 할 관건이다.

5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분석실 89. 10. 6. 실험자료.

한다고 하여 방심하지 말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히로뽕 사용사범은 통상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는 바 히로뽕을 추방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을 선고케 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양형조건, 즉 사용동기, 상습성유무, 유발범죄에 이르렀는지의 여부, 평소의 생활태도 까지도 유감없이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第 4 節 히로뽕 搜查에 따른 一般的인 搜查行政方向

히로뽕사범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결국 히로뽕공급의 차단과 남용의 근면(根面)에서 그 수사방법상의 대책방안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선 공급의 차단을 위하여는 밀조, 밀수입사범 및 밀매조직의 섬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남용의 근절을 위하여는 말단투약자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철저히 검거하여 들임과 함께 히로뽕의 남용이 발붙일 수 없도록 이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수사대책 적인방향은다음과 같다.

1. 진압적인 측면

1) 組織的이고 傳門的인 搜查體制의 確立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전문적인 수사체제(예, 미국의 마약청과 같은 수사체제)를 조속히 확립하여 수사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문수사관을 육성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수사관의 해외 연수를 확대하며 수사능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국제정보수집 및 협조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科學的 搜查裝備 및 지원체제의 확립

최신의 통신 및 기동장비등 수사장비를 확보하고 히로뽕 사범에 대한 모든

정보관리 및 전달체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개발하여 수사의 경제성 및 기동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55]

2. 豫防的인 측면

히로뽕은 약리적인 특징에 의거 한번 중독되면 의존성에 의거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검거처벌 해봤자 거의 재범한다. 그러므로 예방적인 수사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1) 예방적 방법

(1)히로뽕을 거부하는 사회환경의 조성

이를 위하여는 첫째, 매스컴 또는 강연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히로뽕 남용의 해독을 깊이 인식시킴과 동시에, 동사범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정신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히로뽕 남용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는 교과과정에 히로뽕의 해독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세째, 히로뽕 사범이 기생하며 암약하는 터전 즉 퇴폐, 환락, 유흥업소, 무허가 전자오락실 및 숙박업소등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단속을 함으로써 히로뽕 사범단속의 효율성을 꾀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홍보 및 선도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로 가는자 또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있는 임상가, 정신과의사, 부모 및 교사들이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 및 정확한 지식을 알고, 청소년들의 특성 및 심리과정을 잘 이해하여 그들과의 장벽없는 솔직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며, 남용자들의 자신의 고민을 약물사용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주위의 중요한 사람과 의논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실제 모든 문제를 가정내에서 부모와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만 있다면, 히로뽕사용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

---

55) 검찰등 관련기관은 마약복용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간이 시약T.B.P.E을 개발 도입하고 가스총 75정과 망원카메라 26대 마약견 26마리 등 마약수사 장비를 보강했다. 또한 보상금을 크게 올리고 마약정보의 전산화도 마쳤다.

나, 실제 많은 가족의 대화를 보면 대화가 아예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대화이기보다는 일반적 하향식의 충고나 강요인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대화는 대화가 아닌 잔소리일 뿐이다.

약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교사, 학부모에게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도 역시 필요하다.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아 약물에 대한 교육은 금기시 되어 왔지만, 오늘날 이미 성인사회는 쾌락풍조에 물들어 많은 사람이 술, 약물등에 빠지고 유흥·퇴폐업소에 드나들고 있으며, 학생 및 청소년들도 이미 술과 약물, 유흥업소 출입등을 자연스럽게 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절반이상이 본드놀이에 빠져있는 실정이고 국민학교 고학년 이상에서는 본드가 그리나쁜것 만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의 실제 본드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약물놀이의 첫 걸음인 것이다. 이제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호기심으로 우연히 약물을 시작하여 약물중독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할 때라고 본다.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약물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이끌어 내며 이러한 태도위에 어떠한 행동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 사이에서 상당수는 약물의 존재에 대해 편파적인 쪽으로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심정으로 심지어 약물사용금지도 담배나 술을 금지시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그릇된 지식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나쁜쪽으로 가게한다. 이들에게는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어 그릇된 지식을 바로잡아주고, 약물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게끔 해 주어야 한다. 약물에 대해 무서운 측면만 강조되어서는 또 다른 오류가 일어날 수 도 있다. 어차피 약물놀이에 들어갈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예방교육에 관계없이 약물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객관적인 약물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약물중독에 빠질 가능성을 줄여 줄 것이고, 어차피 약물놀이에 들어가지 않을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까지도 약물에 빠질 가능성을 줄여 줄 것이며, 약물사용에

유동적인 학생들에게는 일부 호기심을 자극하여 약물 놀이에 들어가게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약물놀이에 들어가 있는 학생에게는 객관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그들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위험한 놀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 더 이상 늦기전에 위험한 약물놀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가지게 할 수 있고,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고 본다.

참고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① 지식-태도-행동요령(지적인 교육)

1970년대 이후 학생 및 청소년들 사이에 본드사용이 유행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많은 수의 학생 및 청소년들이 술, 담배, 본드, 대마초등을 사용하게 되어 이에대한 학교 및 사회의 예방대책이 미진한 상태이며, 학생 및 청소년들과 직접 접촉하는 선생님이나 관계관들 조차도 히로뽕등 대상약물에 대한 지식이 빈약한 상태이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약의 무서움을 스스로 잘 알아서 약물사용을 시작부터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면서도 신뢰성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② 가치관 정립(정서적 교육)

히로뽕등 약물에 손대게 되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약물로 인한 의식의 변화인데, 약물 이외의 방법으로도 자연스러운 의식의 변화가 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근육이완기법 즉 좌선이나 명상등과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평온 및 잔잔한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건전한 육체 노동 뒤의 땀흘리는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 있으며, 축구, 야구, 배구, 정구, 탁구, 수영, 등산 등의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서도 아주 좋은 유쾌한 느낌을 얻을 수 있으며, 그외 음악, 미술, 서예, 꽃꽂이 등도 사람에게 상당한 기쁨과 정신적 만족을 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각 학생 및 사회인이 적합한 취미를 개발하여 이러한 공인된 방법이 약물로 인한 순간적 쾌락 보다는 강력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일 수 있으며, 죄책감도 없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예방방법이다. 끝으로 모든 사회인들의 도덕적 윤리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문제가 선결과제이다.

부도덕한 사회윤리의 근원을 뿌리뽑고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소외계층 향락산업의 팽창 등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땀흘려 일하고 고생한 만큼 장래가 보장되고 근면 성실한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 지도록 가치관 정립이 되어야 한다.

3. 중독자에 대한 사후대책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미 발생한 히로뽕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 동사범·전과자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추진하여 재범자의 발생을 근절시켜야 한다.[56]

또한 히로뽕등 약물문제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원으로 하여금 일반인 및 중독자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한다거나 히로뽕 상담전화의 운영도 추진하여야 한다.

1) 치료대책

히로뽕 등 약물남용의 適時치료를 위해서는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인데, 대개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 까지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신경써야 할 문제는 조기발견이다. 만약에 자주 아파하던가,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지던가, 가끔씩 비틀거린다던가, 폭력이나 절도문제로 문제시 된다던가,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말썽이 생긴다던가, 성적이 급히 떨어지는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술이나 약물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진단결과 당사자에게 약물문제가 있다고 통보한다던가 약물남용자라고 통보를 하더라도 대개의 남용자들은 자기자신이 약물이나 알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만약 친구들 끼리 어울려 가끔씩 약물을 사용할 경

---

56) 검찰경찰은 마약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마약과 관련된 국제협약기구에의 加入을 추진하는 등 국제력 증진에도 노력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국민 계몽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의 마약류 퇴치 10개년 계획(1991~2000년)에 발맞춰 마약없는 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펴나가고 있다.

우는 부모나 학교 선생님의 진지한 중재 및 대화 만으로도 중지시킬 수가 있지만, 약물의 쾌감에 깊이 빠져 사용빈도수가 빈번하여 비행등이 자주 문제가 될 경우는 좀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지며, 사용자가 친구들과의 약물사용 보다는 혼자 즐긴다던가 약물을 며칠간격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는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

만성적인 진행성질환(정신과적 전문치료시 환자가 약물중독의)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치료에 적극 협조할 때에는 외래에서의 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질병을 인정하지도 않고 치료에의 동기마저 없으며 계속 치료자와의 약속을 저버릴 때에는 입원치료를 해야한다. 아울러 환자의 환경이 약을 끊으려하는 의지에 부합하지 않고 방해요소로 작용하던가, 내성 및 금단증상이나 합병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강제 격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57]

만약 이러한 경우는 약물과 강제 격리시켜 잠시나마 약물의 영향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자신의 과거 모습을 회상하게 해주며, 약물사용도 일종의 병이며 만성적 진행성 질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환자자신이 약물남용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약물남용의 치료에서 가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일단 입원시에는 담당의사가 치료를 하겠지만, 입원치료는 단지 급한 불을 끄는 치료이며 궁극적인 치료는 약물들이 널리 퍼져있는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쟁의 과정중 가족의 따뜻한 사랑의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다. 즉 그가 과거에 저지른 많은 잘못만을 생각하여 환자를 증오하고 불신하기 보다는 약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환자의 나약한 의지를 격려해 주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히로뽕등 약물남용에 들어갔던 사람이 그곳으로부터 헤쳐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자주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이 알아야 한다. 입원치료의 경우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퇴원이후도 계속하여 2년 정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담당주치의와 긴밀하고 꾸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 및 주치의사외에도 환자와 관련이 있는 친구, 선생님, 친척, 종교

57) 민병근, 김헌수,"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고찰", 정신의약회, 제25차 학술대회 1984. 12. 9]

계의 목사, 신부나 승려 등도 모두 환자의 재활에 관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특히 과거 환자와 같이 히로뽕 등 약물남용을 했었던 친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약물대신에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 생기지는 않았지만 약물을 끊기위해 모임을 갖는 약물중독자 끼리의 친목모임에 가입하는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들 모임의 철학은 평생동안 무슨일이 있어도 술이나 약물을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한번 알콜이나 약물에 중독된 경우 평생 알콜 및 약물중독이라는 개념하에 내일은 약물이나 음주를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은 약물이나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모여 서로 결의하는 친목모임이다. 이러한 모임에 계속 참여만 한다면 약물이나 알콜중독에서 벗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알콜중독에 대한 단주친목모임(Alcoholic Annonymous)은 이미 대도시에 생겼으며, 약물친목모임(Norcotic Annonymous)은 아직 생기지 못한 실정이나 약물중독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경우 약물친목모임도 생길 전망이며, 현재 국립서울 정신병원에 약물친목모임이 한군데 생겼는데 효과적이다.

이에대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치료방법이 있는데 유지요법과 마약길항제법이 조금 실효를 거둘 수 있으나 생화학적 차단법 수용기 차단 면역요법등은 아직 이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만성적인 히로뽕 중독은 아예 치료 불가능한 정도다.

그럼 다음과 같은 치료제에 대해 알아 보겠다.

(1) 유지요법 : 이 모델에 대해서는 헤로인 및 메사돈과같은 합성적인 아편양제제약물로 대체하는 것이다.

(2) 마약길항제 : 이 모델에서는 아편길항제로 헤로인의 심리적 화학적 및 생리적 효과를 단절시키고 또한 아편양제제에 대한 강박 충동적인 상습을 근절시키는데 사용한는 것으로 초창기에는 cyclazocine이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naloxone이 사용된다. chclazocine의 약효과 2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갈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힘들며 naloxone에 대한 효과는 현재 기대중인데 이러한 길항제의 효과는 마약의 행복감(euphouic)효과를 차단시키는 점이다.

(3)생화학적 차단 : 이방법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심리적 황홀감을 초래하는 과정과 신체적 의존이나 내성을 형성케하는 과정은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심리적 기분을 고양시키는 과정을 전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치료법이 개발되리라는 것이다.

(4)수용기 차단(receptor blockade) : 이는 마약길항제에 비해 한단계 더 진보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편길항제에서 처럼 계속해서 순환하는 분자에 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영구적 억제제로서 마약 수용부위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차단시켜 보자는 것이다.

(5)면역요법 : 이방법은 순환 또는 대사화 될 수 있는 특수한 항체를 혈장내에 주사된 헤로인과 결합시켜 아편양제제가 수용부위에 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가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58]

2) 재활(再活)대책

사용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그 밀조·밀수사범을 단속하여 공급원을 봉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새로이 빠져드는 사람이 없도록 계몽하고 적발된 사범은 철저히 치료하여 다시는 손대지 않게하는 일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히로뽕은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빠져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이 재범자들로서, 집계에 따르면 지난 81년 39.6%이던 히로뽕사범의 재범률이 88년에는 60.4%로 최근에는 70%로 늘었다.[59]

89년 5월 부산에서 히로뽕을 복용하고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자살한 여(呂)모씨(당시 30세)는 출감한지 20일밖에 안되는 히로뽕 상습투약자였다.

복용자는 일단 검거됐다 하더라도 치료없이 형벌만 받고 출소하면 그 몸에 밴 중독성 때문에 다시 복용하다 붙잡혀 수감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와 단속위주로 펴고있는 퇴치활동을 재활위주로 전환되야 한다고

---

58) 이정균, "습관성약물중독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 9, No 2, 1970.

59) 보사부, 「마약류실태」, 1988. p.12

말하고 있다. 아무리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중독성을 제거하는 치료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상인으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약중독자의 치료, 재활문제를 중시하여 최근 정부는 전문치료 병원을 건립하기 시작했으며 또 치료보호제도, 치료감호제도와 같은 히로뽕 중독자 치료를 위한 법적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퇴치활동은 아직도 단속과 처벌위주이며, 중독자 치료를 위한 각종 시설, 제도가 미흡할 뿐더러 마련되어 있는 것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활을 위해 국립서울정신병원 등 3개 국립병원을 포함한 전국 23개 병원을 중독자 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복용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고 공주 치료감호소를 범죄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23개 지정병원에는 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모두 315개의 병상과 전담의사 72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중독자 치료전문의는 거의없어 그 치료수준이 크게 뒤떨어진 형편이며, 그나마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가는 중독자수는 88년 527명, 89년 335명, 90년 178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60]

약물이 확산되고 았는 현실에 어긋나는 이러한 현상은 치료보호제도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치료대상자 또한 마약복용자로서 범법자이므로 그 치료의뢰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손을 거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원기간은 최고 6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에 필요한 16~30일 정도만 치료받다가 퇴원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완쾌율은 10%를 밑도는 실정이다. 또 일반 약물환자들은 좀처럼 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그 까닭은 법상 환자의 중독사실을 발견한 의사는 지체없이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고 있어 환자의 신분이 드러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

60) 조선일보, 1990. 10. 5. 10면

치료감호제도 역시 중독자의 재활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심신장애자들의 범법행위를 교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검찰의 치료감호청구에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는데다가 중독에 또 다른 범죄가 있어야만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중독자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의사 12명에 500개의 병상이 마련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은 중독자가 기껏 년간 4~15명에 불과한 것도 그 때문이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의 2천여평 부지에 착공, 국립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병원은 병상 200여개에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갖추어 장기 입원치료를 통한 중독자 재활에 큰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독자 예방 치료라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단속과 처벌을 중시하고 있는 지금의 마약정책 부터 폭넓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나 견해차이는 있다.

第 5 章 結　　論

윤리와 도덕관이 확고했던 시대에는 마약에서 파생된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침투와 전래에 의거, 전통사회의 윤리관과 도덕관이 무너져 가면서 서양의 개인주의와 자유분방한 사상과 함께 망국병이라 불리우는 마약상습과 각종 범죄가 증가되는 추세에 직면해 있다.

작금의 국내외적인 추세라면 2000년대는 동서 양대진영의 대결이 아닌 핵과 공해, AIDS와 함께 인류를 위협하는 마약과의 대결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마약범죄의 증가추세에 직면하여 마약수사기관들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인 한국도 마약범죄의 예방과 척결에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있으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거래와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상습적인 마약복용, 그리고 증가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완전히 퇴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여러 마약중에서도 히로뽕이라 불리우는 마약에 의한 범죄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히로뽕사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수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봄으로서 마약수사상의 문제해결에 힘써보고자 하는것이 본 연구자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바와같은 의도를 담고있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였다.

첫째, 제2장의 이론적배경에서는 마약류의 약리적 개념과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마약의 정의를 나열하였고, 마약의 일부분적 개념인 히로뽕에 대한 개념과 약리적 작용, 그리고 이의 남용에 따른 개인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둘째, 제3장은 본연구의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히로뽕사범의 수사상 실태와 그 실태의 분석에서 도출한 수사상의 문제점을 나열하였다.

히로뽕사범의 실태는 년도별 히로뽕 발생빈도와 발생지역, 범죄유형별 범죄자

연령추이, 년도별 직업별 현황, 히로뽕단속현황, 히로뽕사범 현황 등을 열거하였고 히로뽕사범의 일반적인 경향과 수사행정체제를 실태분석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실태분석에 의해서 도출된 문제점은 수사이론상의 문제점, 수사실제상의 문제점, 수사방법상의 문제점으로 분류하였고 이들 3개의 문제점을 각각 다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위의 3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수사이론상의 개선점, 수사실제상의 개선점, 수사방법상의 개선점, 일반적 수사행정상의 방향의 4부분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을 각각 다시 세분하여 수사이론상의 개선점은 히로뽕 약물의 입증방법, 물증없는 사건의 입증방법, 부인사건의 입증방법, 뇨 검사방법, 효과적인 함정수사방법으로 수사실제상의 개선점은 히로뽕사범퇴치에 대한 국민정신강화, 수사예산의 확보, 정보원의 올바른활용, 연안봉쇄 방법, 수사체제의 현대화로, 수사방법상의 개선점은 제조사범수사, 유통사범수사, 소지사범수사, 사용투약 사범수사로 일반적 수사행정방향은 진압적인 측면, 예방적 측면, 중독자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중심으로한 본 연구자의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수사행정체를 정비하여 강력하고 일원화된 체제를 구축해야겠으며, 기동력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사장비의 확충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둘째, 체계적인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의 완비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강력한 범세계적인 공조수사망을 구축해야 하겠다.

셋째, 예방적인 차원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 마약의 폐해와 위험성 등을 홍보하여 국민의식을 강화하고, 특히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층의 마약복용의 근절을 위해, 학교교육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넷째, 마약의 예방과 수사의 효율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겠고,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여건마련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수사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 특진제도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수사비나, 특수수당 등을 대폭인상하여 실질적인 월급여 인상의 혜택을 주고, 수사관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유학이나, 해외연수 등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하겠다.

여섯째, 수사관들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이론적인 무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서 이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예방적차원에서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마약범죄로서 검거된 마약사범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재범방지를 위한 완벽한 시설확충은 물론 과학적인 재교육훈련을 위한 제도적인 학습교재를 개발해야 하겠고, 철저한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에 재취업하는 기회를 넓혀주어야 하겠다.

여덟째, 수사경찰의 양성 및 전문화를 위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수사경찰의 현대화를 앞당겨야 겠다.

국민 수준은 날로 높아가고 고도의 정보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경찰수사력도 고도화 되어야 한다.

실례로 미국의 FBI수사요원 양성과정과 같은 양질의 우수요원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국민들을 법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기관은 경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다.

또한 현행 제도에 있어서 경찰간부부터 출발하는 양성과정 비중을 소규모화하고 실제 현장수사를 담당하고 수사권 행사를 장기간 몸담아 종사하는 실무요원을 양성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어야 한다. 실무를 담당할 이들 순경급요원에 대해 전원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자로 채용해야 되며 승진도 수사부서 자체내에서 단계적으로 양성시켜야 전통 계급사회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강력한 수사권발동은 물론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수사경찰비리가 근원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參考文獻

國內單行本

1. 김경빈, 「유흥업소 주변의 습관 중독성 물질 오남용실태」, 한국형사정책구원, 1991.
2. 대검찰청, 「마약백서」, 1991.
3.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권 121호, 1991. 경찰청, 범죄분석 1991.
4. 박희준 번역, 오오끼 고오스케, 「마약, 뇌, 문명」, 1991.
5. 法務部, 「各國의 司法警察制度」, 법무자료 제98집 1988.
6. 법무연수원, 「마약류사범의 실태 파악」, 1989.
7. 保社部, 「麻藥類管理指針」, 1984.
8. 保社部, 「藥物誤, 濫用」, 1986.
9. 부산지방검찰청, 「마약류의 실태와 수사」, 1986.
10. 안영준, 「담배, 술, 마약」, 동환출판사, 1986.
11. 이근명, 「마약실무」, 신우인쇄주식회사, 1990.
12. 이승덕, 「마약」, 성바올로 출판사, 1990.
13. 全經壽, 「마약범죄예방과 수사방법」, 월간수사연구사, 1992.
14. 전경수, 「히로뽕 사범 수사방법론」, 명문사, 1991.
15. 주왕기, 「약물남용 세계사」, 1989.

論 文

1. 김광익,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1)",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제1집, 1983.
2. 나철,"한국고교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조사", 신경정신의학, Vol19, No 3, 1978.
3. 민병근, 김헌수,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정신의학회 제25차 종합학술대회, 1984.
4. 서원벽, "마약류 남용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Vol 9, No 2, 1970.

5. 신성태, “마리화나 정신병 일례”, 신경정신의학 Vol 11, No3, 1972.
6. 이정균, “습관성 약물중독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 9, No 2, 1970.
7. 전경수, “각성제사범 수사방법 고찰”, 중앙경찰학교, 1991.
8. 전경수 “마약류 사범 수사문제점 및 방법연구”, 중앙경찰학교, 1990.
9. 정대식 외2명, “청소년 Dextromethorphan. HBr(R러미나) 남용”, 신경정신의학 Vol 25, No4, 1986.
10. 전경수, “마약류 남용의 원인분석 및 개인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앙경찰학교, 1992.

其他 資料

(공판 및 사건기록)

1. 부산지방검찰청 81형, 제561호. 大規模 히로뽕 密造團「이 황순」사건, 1981.
2. 마산지방검찰청 86형, 제7186호. 移動式 製造 設備에 의한 히로뽕 密造 事件, 1986.
3. 부산지방검찰청, 82형, 제10713호.「麗水派」히로뽕 密造 事件, 1982.
4. 부산지방검찰청, 형제13488호. 大規模 히로뽕 密造 事件, 1987.
5. 부산지방검찰청, 형제1281호. 大規模 헤로인 國際密輸事件, 1988.
6. 부산지방검찰청, 형제919호.「世宇派」히로뽕 밀조및 밀매단 사건, 1989.
7. 서울高判 85 노 890. 마약법등 1985.

新 聞

1. 경향신문, 20면, 마약 대용 정글 쥬스 환각범죄 격증, 1991. 2. 14.
2. 조선일보, 1면, 국내 히로뽕 제조 1인자 검거, 1991. 11. 1.
3. 조선일보, 10면, 향락업소 17만곳 매춘여성 65만명중 10만명 히로뽕 사용, 1991. 10. 16.
4. 조선일보, 23면, 마약류 침투확산 심각 학생 가정주부 상당수, 1991. 12. 18.
5. 세계일보, 10면, 히로뽕 100억대 밀매자 검거, 1992. 1. 13.
6. 조선일보, 8면, 마약살인 21세기의 조명, 1992. 1. 17

7. 조선일보, 22면, 일본서 밀반입 히로뽕 상습 복용자 27명 무더기 구속, 1992. 2. 13.
8. 동아일보, 10면, 처벌보다 예방에 역점, 1992. 4. 25.
9. 서울신문, 17면, 천억대 히로뽕 밀조단 적발, 1992. 4. 21.
10. 중앙일보, 21면, 마약밀수 폭발적, 작년 동기간의 280배, 올 석달간 300억 육박, 1992. 4. 27.

國外 單行本 및 論文

1. 飛田請弘, 松補恂·澤 新「覺せい 劑事犯とその捜査」, 立花書房. 1976.
2. 村上尙文,「麻藥, 覺せい劑犯罪」, 日世社. 1982.
3. 日本全國防犯聯合會,「日本のドラッダ問題」, 1987.
4. 日警察廳,「警察白書」, 1985, 1986, 1989.
5. U.S.Department of Justic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RUGS. OF. ABUSE. 1984.
6. Khantzian, Eduardj. "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of Addictive Disorders", Am J Psychiatry 142 : 11, Nov, 1985.
7. Goodman and Gilman,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peutics", Vol, Ⅶ, 1985.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of Drug-related Investigation and Their Solutions

— On Investigating Philopone cases —

Jeon Kyoung Soo
Majored in General Adm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ty

In Korea, after some latent period, the number of philopone abuse cases, partly influenced by the drug-abuse spread in Japan, has rapidly increased from around 1988 up to the present.

Admitting that investigation agencies concerned do their best in coping with such pathological phenomena, some fundament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cluding investigators' innocence and inexperience of drug-abuse effect and legal regulations, and their poor operations of related regulations in practic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hereby facilitate the investigation procedure.

First, the measures to be taken are recommended respectively against the problems of general indifference to drug-abuse in the society, securing enough budget for investigation, intrinsic difficulty in deriving credible information from cooperative citizens, and practical difficulties in sea-blockade to prevent drug-trafficking.

Secondly, some proposals are made to solve the theoretical problems involved in verification of drug-abuse cases, verification of cases without evidence, urine-test, entrapment, etc..

Thirdly, improvements on investigation method have been made with respect to various types of cases, such as manufacturing, providing, holding and using of drugs.

Methodologically, I have cited foreign as well as domestic related literature and, in particular, made use of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 data of Pusan area in detecting the related problems and recommending solutions thereof.

It is my sincere belief that this study can be of some help to all the investigators in taking counter-measures against philopone abuse spread. And it cannot be emphasised too much that the sound community spirit and effective public relations matter most in preventing the further spread of drug-abuse.